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4호 2019. 12. 30.(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84호 하동군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385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49
- 하동군 조례 제2386호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51
- 하동군 조례 제2387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하동군 조례 제2388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하동군 조례 제2389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하동군 조례 제2390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 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 하동군 조례 제2391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11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4
- 하동군 규칙 제1212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 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209호 양일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98
- 하동군 고시 제2019-210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준공 인가 및 고시..... 100
- 하동군 고시 제2019-211호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분) 기본계획 고시..... 101
- 하동군 고시 제2019-212호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102
- 하동군 고시 제2019-2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4
- 하동군 고시 제2019-215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구(청암면사무소))..... 108
- 하동군 고시 제2019-21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111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 하동군 고시 제2019-221호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분) 시행계획 고시	112
○ 하동군 고시 제2019-223호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고시	113
○ 하동군 고시 제2019-225호	하동호 낚시, 투망 등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지정 고시	117
○ 하동군 고시 제2019-226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수출재**어조합법인 김정*)	119
○ 하동군 고시 제2019-227호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 (항만물+)	121
○ 하동군 고시 제2019-228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3
○ 하동군 고시 제2019-229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김재* 외 2인)	133
○ 하동군 고시 제2019-230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135
○ 하동군 고시 제2019-23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139
○ 하동군 고시 제2019-233호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주지에**)	140
○ 하동군 고시 제2019-235호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42
○ 하동군 고시 제2019-234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44
○ 하동군 고시 제2019-236호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158
○ 하동군 고시 제2019-237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객길어촌계)	160
○ 하동군 고시 제2019-238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계획(변경)	162
○ 하동군 고시 제2019-239호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164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244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5
○ 하동군 공고 제2019-1315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9
○ 하동군 공고 제2019-1335호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90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222호	명창 유성준 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199
○ 하동군 공고 제2019-1245호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204
○ 하동군 인사위원회 제2019-1호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5
○ 하동군 공고 제2019-1281호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217
○ 하동군 공고 제2019-1282호	안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222
○ 하동군 공고 제2019-1330호	신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241
○ 하동군 공고 제2019-1336호	하동군 섬진강 환경지킴이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268
○ 하동군 인사위원회 제2019-2호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74
○ 하동군 공고 제2019-1363호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275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4 호

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

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하동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

- 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7.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무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 회상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금지 등) ① 의원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①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하동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및 이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업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1천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의 집행기관 및 군의 산하기

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7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

- 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3.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
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
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
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
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
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
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

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

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7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 (제5조, 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3. 기타 (제5조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실천규범의 경미한 위반 ○ 윤리실천규범의 중대한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하동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남, 여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수행업무내역					
	분야	<input type="checkbox"/>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영리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영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보수수령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겸직 등 금지) 및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겸직금지 등)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회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4항 관련)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남, 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겸직 등 금지) 및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6조(겸직금지 등)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4항 관련)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호 사유를 기재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bottom: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8px;"> 하동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top: 20px;">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div>											

■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남, 여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의
------	--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소명내용	
------	--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제4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남, 여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 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	-------------------------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	--

해당 의원 의견	
----------	--

기타 참고사항	
---------	--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9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남, 여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합계		명		금액 천원	부담기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남, 여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	--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서식] (제20조제6항, 제26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4호 서식] (제21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고 자	성 명	남 여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	--	--	--	--	--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 서식]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남 여	소속위원회	연락처
-----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거래금액	거래원인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대상	거래 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별지 제16호 서식] (제25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외국인생년월일)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	-----------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5 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6 호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된 단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사용·수익허가) 시장의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및 횟수는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2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6조(상인회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4.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5.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시장관리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번영회”를 각각 “상인회”로 한다.

4. 제20조 중 “시장관리인이”를 “시장관리자”로 한다.

5. 제21조 중 “시장번영회”를 “상인회”로 한다.

6. 제25조 중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7. 별지 제1-1호서식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3항의 시장 사용허가 갱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시장번영회 및 시장관

리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로 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7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하동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8항 단서 중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별표상”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물대부료 산출 산식(제30조 관련)

1.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건물·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text{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면적이 된다.)
-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 ※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위의 산식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3. (생략)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3. (현행과 같음)

<삭제>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
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
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
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
----- 별표 2-----

-----.

1. ~ 7.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2-----

----- 별표 2-----
-----.

③ -----

----- 별표 2-----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율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8 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을 “하동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업종별·요율표”를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로, “계량기·구경별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3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초·중·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
6.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세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제28조 관련)

구 분		요 금(원)	비 고
업 종 별	단 계 별		
가 정 용	0m ³ ~ 20m ³	653	
	21m ³ ~ 30m ³	850	
	31m ³ 이상	1,046	
업 무 용	0m ³ ~ 100m ³	1,205	
	101m ³ ~ 300m ³	1,566	
	301m ³ 이상	1,927	
영 업 용	0m ³ ~ 30m ³	1,098	
	31m ³ ~ 50m ³	1,427	
	51m ³ 이상	1,757	
옥 탕 용	0m ³ ~ 200m ³	936	
	201m ³ ~ 500m ³	1,217	
	501m ³ 이상	1,779	
공 업 용	0m ³ ~ 50m ³	860	
	51m ³ ~ 300m ³	1,200	
	301m ³ 이상	1,480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제28조 관련)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원)	비 고
13mm	450	
20mm	650	
25mm	1,080	
32mm	1,580	
40mm	1,760	
50mm	3,040	
75mm	8,170	
100mm	8,900	
150mm	15,270	
200mm	18,330	

※ 구경별 기본요금 월 산정금액 = 계량기 구입가격 / 72개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u>군</u>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하동군</u> ----- ----- ----- ----- -----</p>
<p>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u>군</u>의 관할 구역 중 <u>군수</u>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급수구역) ① -----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u>업종별·요율표</u>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3의 <u>계량기·구경별 급수장치 손료</u>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8조(요금) ① ----- <u>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u>----- ----- <u>구경별 기본요금</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p> <p>② <u>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u></p>	<p>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p>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3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초·중·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
6.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세대

③ ~ ⑤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9 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⑥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건축코디네이터 운영)”을 “(공공건축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각각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 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④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⑥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

<신 설>

탁의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 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군-----

한다.

② (생 략)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군수는 현장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상근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코디네이터 등 소요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건축코디네이터 운영) ① 군수

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건축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공건축가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공건축가 운영) ① -----

- 공공건축가-----

② 건축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건축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제22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제13조의2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제13조의3에 따른 건축코디네이터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비

5. ~ 7. (생략)

② ~ ④ (생략)

-.

② 공공건축가-----

-----.

③ 공공건축가-----

-----.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조 또는 용자)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공공건축가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 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0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마을 대표자”를 “마을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대상마을”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마을의 대표자”를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탑승)일지 (제5조제3항 관련)

마 을 명			
운행일시	년 월 일 :		
운행구간			
탑승자명단			
운행요금(원)	구간요금	탑승자 부담	차 액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전자-----
-----.

제8조(비용지원 중단) -----
-----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호-----

-----.

1. 2.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1 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제3조제2호 중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관리운영 하는”을 각각 “관리·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를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수기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 예약은 관리운영자와 협의하여 전화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개·보수하는”을 “개수·보수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나.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다.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라.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마.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바. “지역주민”이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사.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아.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자.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차.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카.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앞날)을 말한다.
- 타.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 른	1명/1일	1,000	800	
	청소년		600	500	
	어린이		300	200	

※ 동절기(12~2월)에는 입장료 면제

3.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기준	이용기간	요금(원)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 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6인실	1동/1일	110,000	80,000		
		4인실		100,000	70,000		
	트리하우스 (단독형)	2인실		80,000	60,000		
		3인실		100,000	70,000		
		4인실		110,000	80,000		
	숲속휴양관 (콘도형)	6인실		1실/1일	100,000	70,000	
		8인실			110,000	80,000	
	세미나실	1실(405㎡)		4시간	300,000	200,000	
8시간(1일)			400,000	300,000			

가.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정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정한다.

라.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구분	기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모노레일	1명	3,000			
산림레포츠시설	1명	어린이코스	10,000	8,000	
		성인코스	15,000	13,000	
		스포츠코스	15,000	13,000	
		스카이쥬(코스당)	10,000	8,000	
목재문화체험장	대품(기계작업)	체험시간 (2시간)	3,000	2,400	체험 재료비 별도
	중품(공구작업)		2,000	1,600	
	소품(단순작업)		1,000	800	
	체험장 시설 사용	4시간	40,000		

[별표 2]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제5조 관련)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사람
- 2)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3) 삼화에코하우스 숙박객
- 4) 서리 산촌생태마을 숙박객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지역주민		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 2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숙박시설 요금 2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문화가족		숙박시설 요금 2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한부모가족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미나실 요금 50% 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u>구재봉 자연휴양림</u>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u>”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산276번지 일원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관리운영자"란 <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u>을 직접 <u>관리운영</u>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u>관리운영</u>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p><u>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자연휴양림</u>----- ----- -----.</p> <p>제2조(명칭과 위치) <u>하동군 자연휴양림</u>(이하 “<u>휴양림</u>”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u>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산 276번지 일원 2. <u>하동 편백 자연휴양림</u>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 279-9번지 일원 <p>제3조(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휴양림</u>----- <u>관 리 · 운 영 하 는</u> ----- ----- <u>관리·운영하는</u> ----- -----.

능하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휴양림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자와 협의하여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사람

2.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삼화에코하우스 숙박객

4. 서리 산촌생태마을 숙박객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4. (생략)

② (생략)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개수·보수하는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6.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11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조례”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p>
<p>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p>
<p>제18조(가격평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u>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p>	<p>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감정평가업자</u> ----- ----- -----.</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 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12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동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택시운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209호

양일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제4항에 따라 『양일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양일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진교면 양포리 양일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양일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 업 비 : 금 500백만원(국비 187, 도비 24, 군비 289)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어울림마당 조성, 양달몰 알림이 구축
- 지역역량강화 : 주민 및 리더 교육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80-2517)

하동군 고시 제2019 - 210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준공 인가 및 고시

준 공 검 사 서

신청인	성명	양 일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286-101				
1. 개간의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381번지, 산102-8번지				
2. 승인의 면적		381번지 807㎡중 807㎡, 산102-8번지 1,403㎡중 1,040㎡				
3. 준공의 면적		1,847㎡				
4. 개간의 용도		전작재배				
5. 토지 조서						
토지소재지						
		승인면적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시군	면 리 지번 지목		전	답	기타	계
하동	북천 방화 381 임	807㎡	807㎡			
하동	북천 방화 산102-8 임	1,040㎡	1,040㎡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2019. 11. 25.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9 - 211호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분)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26.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분)
2. 사업의 목적 :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3. 개략사업비 : 금405,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연번	분류	마을	사업내용
1	마을기반정비	가탄	마을안길 정비 1식
2	마을기반정비	원탑	가로등 설치 1식
3	마을기반정비	의신	마을 돌담길 정비 및 회관 마당정비 1식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 ~ 2020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

※ 관련 도서들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880-2513)에 비치

하동군 고시 제2019 - 212호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제4항에 따라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옥종면 법대리 법대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법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 업 비 : 금 500백만원(국비 126, 도비 16, 군비 358)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멧골저수지 연꽃쉼터, 고고딸부자 이야기길
- 지역역량강화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80-2517)

하동군 고시 제2019 - 214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97-63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9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13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4 외 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94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97-63	2019 1128		2009 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 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산3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409-122	2019 1128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수곡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86-7	2019 1128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 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61	2019 1128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5-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29	2019 1128		2007 0618	관곡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강변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76-1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 길 141	2019 1128		2007 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 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19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서길 32-12	2019 1128		2008 0402	마을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 로라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71, 산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34-4	2019 1128		2007 0618	모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53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반석길 80-47	2019 1128		2007 0618	마을의 생긴 모습이 복치형 국의 명지라 하여 꺾이 없 드려 있는 모양이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274-12, 산 274-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259	2019 1128		2007 0618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나려 고 왔다가 머문곳으로 범 왕시를 창건하였다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984-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불무안길 26-43	2019 1128		2009 0302	불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 형특성을 합성하여 불무안 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4-10, 54-1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80-5	2019 1128		2007 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 여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 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2019 1128		2007 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부여	428-1, 846-6	137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75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재길 319	2019 1128		2009 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192-4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제길 4-11	2019 1128		2009 0302	옛날 마을 뒷편에 큰 서당 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35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62-77	2019 1128		2007 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두 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 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4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8-5	2019 1128		2007 0618	시장이라는 지역 특성에 일 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 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청룡리 123-24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중중앙 길 81-1	2019 1128		2008 0402	옥중면의 중심도로로서 옥 중중앙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7-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28-1	2019 1128		2009 0302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 인촌을 도로명에 반영

□ 건물번호합병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1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11	2019 1128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11	2019 1128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 47-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 47-6	2019 1128	원목길 47-6로 합병	2007 0618	박석거리, 전나무동, 서재땀,원목계 등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 진 자연마을이름 반 영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 47-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 47-6	2019 1128	원목길 47-6로 합병	2007 0618	박석거리, 전나무동, 서재땀,원목계 등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 진 자연마을이름 반 영	

□ 건물번호폐지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4	20191128	건축물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20	20191128	건축물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215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청암면장)		
법 인 번 호	614-83-00025		
하 천 명 칭	황천강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1185-2(답) *임시 가설건축물(컨테이너1식) 설치		
점 용 면 적	18㎡		
최 초 허 가 일	2019년 11월 29일		
점 용 기 간	2019년 11월 29일 ~ 2024년 11월 29일		

허 가 조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2019-216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산림녹지과)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5-3번지 일원		
점 용 면 적	1,500㎡		
최 초 허 가 일	2019년 11월 29일		
점 용 기 간	2019. 11. 29. ~ 2020. 05. 31.(183일간)		
<p>「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하동군 고시 제2019 - 221호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분)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06.

하 동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분)
- 2. 사업의 목적 :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3. 개략사업비 : 금273,020천원
- 4. 주요사업내용

연번	분류	마을	사업내용
1	마을기반정비	가탄	마을안길 정비 1식
2	마을기반정비	원탑	가로등 설치 1식
3	마을기반정비	의신	마을 돌담길 정비 및 회관 마당정비 1식

-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6. 사업시행기간 : 2019 ~ 2020
-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

※ 관련 도서들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880-2513)에 비치

하동군 고시 제2019 - 223호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항 규정에 따라, 한·중 도시발전 연맹 소속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분야에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경제번영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9일

하 동 군 수

붙임 :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1부.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회의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동북아시아에서 바다를 마주보며 공존, 교류하고 있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소속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분야에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경제번영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중 도시발전연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한·중 도시발전연맹 규약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공동발전 및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동군, 남해군, 구례군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하동군수, 남해군수, 구례군수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하동군수, 남해군수, 구례군수 순으로 1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소속기관의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대외업무 부서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 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각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④ 협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회의 개최 후에는 해당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와 연계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은 각 자치단체의 대외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참석자의 범위는 협의회의 간사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협의 회의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연맹사무소 설치) ① 협의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연맹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맹사무소는 한·중 도시간 교류협력 지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연맹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공통경비) ① 매년 소요되는 공통 경비는 회원 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한다.

② 중국 연맹사무소의 운영, 공동사무의 처리,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공통경비를 사용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수당은 공통경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 공통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간사가 지출하고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결산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2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225호

하동호 낚시, 투망 등 행위의 시가·대상·지역 등 제한 지정 고시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 및 투망 등의 행위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1. 낚시, 투망 등 금지구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하동호 낚시, 투망 등 행위 제한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종이리 및 평촌리 하동호 전 지역

2. 금지 기간 및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가.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19년 12월 16일 ~ 별도 고시까지

나. 유어행위 제한 대상 ; 낚시, 투망 등 유어행위 일체

다. 제한사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낚시객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분별한 낚시, 투망 등 행위에 따른 수질악화방지 및 주변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3. 제한사항을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가.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나. 벌칙 :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4. 기타사항

◦하동호 낚시, 투망 등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055-8800-2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및 평촌리 하동호 전 지역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226호

주 소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83-32		
성명(법인명)	하동수출재* *어조합법인 대표 김정* 194771-0000616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황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붙임참조		
점용면적	18,000㎡		
최초허가일	2019. 12. 11.		
점용기간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일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가조건	별도 붙임과 같음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2월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하동군수</p>			
<p>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공고

하동군 고시 제2019-227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항만물*(주)		
	대표자 (성명)	김수*	주소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89번길 57
소하천명		삼성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89번길 57		
	면적	23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2019년 12월 11일 ~ 2024년 12월 11일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확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228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하동군수

나.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가. 목적 및 사유 : 고전면 고하리 ~ 성평리, 주교천 제내지는 주교천 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고하지구(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예방과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비사업에 따라 펌프장 유출관로, 수문 및 소하천정비에 따라 주교천 제방 정비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소하천정비 L=740m(전석쌓기 및 옹벽블록), 소하천교량 3개소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고하리 ~ 성평리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 12. ~2021. 1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 기관인 경상남도 하동군 안전총괄과 하천 관리담당(☎055-880-2532~35)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분		지 목 별													비고
		임	구	답	대	도	전	잡	창	목	학	천	제	계	
계	필지	-	12	65	-	26	1	1	-	-	-	2	-	107	
	면적(㎡)	-	7,880	32,334	-	3,102	181	11	-	-	-	1,824	-	45,332	
국유지	필지	-	12	25	-	19	1	1	-	-	-	2	-	60	
	면적(㎡)	-	7,880	17,607	-	2,298	181	11	-	-	-	1,824	-	29,801	
사유지	필지	-	-	40	-	7	-	-	-	-	-	-	-	47	
	면적(㎡)	-	-	14,727	-	804	-	-	-	-	-	-	-	15,531	

토지조서 (1)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잔여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5	답	1,786	1,722	6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4	김종필		
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3	답	3,254	72	3,182		하동군		
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7	답	1,041	829	212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811-501	정창순		
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8	답	79	-	7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	설동근		
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5-1	답	1,944	1,636	308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아파트 18동 409호	문태기		
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4	답	1,911	1,876	3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	설동근		
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8-2	답	292	-	29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	설동근		
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3	답	3,468	3,158	31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57-13	정순익		
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3	답	67	-	6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8	정한균		
1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3	답	147	-	147	서울시 종로구 종화동 195-2	정한채		
1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1	답	1,617	1,551	66	경남 하동읍 광평리 231-3	정효채		
1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3	답	2,099	1,929	170	경남 하동읍 광평리 231-3	정효채		
1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7	답	120	52	68	서울시 종로구 종화동 195-2	정효채		
1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2	답	1,540	1,497	4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주성길 9-8	강택환		
1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5	답	1,297	1,192	10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8	김수남		
1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6	답	1,020	1,001	1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주성길 9-8	강택환		
1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6-2	도	63	-	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58	최남욱		
1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1	답	1,707	1,577	130	부산시 사상구 개법동 581-5	김민구		
1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4	답	2,604	2,408	19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4	정옥선		
2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	답	2,239	1,740	499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27	박순덕		
2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1	답	1,350	968	38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47	정갑채		

토 지 조 서 (2)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잔여면적	권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2	도	69	-	69	통영군 통영읍 진량리 941	정규병	
2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4-2	도	965	438	527	진양군 내동면 삼계리	박재구	
2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4-1	도	36	-	36	진교면 백운리 608	정수월	
2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4-2	도	20	-	20	진교면 백운리 608	정수월	
2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2	도	99	87	12	서울 종랑구 중화동 195-2 우성타운 7동 101호	정한채	
2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4	도	353	276	7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31	홍미강	
2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5	답	782	560	22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47	정갑채	
2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2	답	1,776	1,735	4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47	정갑채	
3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1	답	1,925	1,917	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26	김진근	
3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1-5	답	282	-	282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1-4	답	2,751	2,747	4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6	답	551	11	540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3	답	1,571	1,566	5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5	답	205	-	205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2	답	2,163	2,129	34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1	답	1,389	1,352	3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8	정창철	
3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2	답	2,557	2,436	12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11	조영수	
3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	답	1,317	1,104	213	부산시 남구 망미동 881-27	김군자	
4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1	답	1,521	1,224	29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 102동 905호	정병국	
4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6	답	16	-	16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우방타운 106동 802호	김윤수	
4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	답	741	-	741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우방타운 106동 802호	김윤수	

토 지 조 서 (3)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잔여면적	권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4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3	답	1,728	-	1,728	부산 남구 대연동 1600-176	김한수	
44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8	답	1,933	1,911	22	경남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64	김한수	
45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	답	2,580	-	2,580		하동군	
46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7	답	27	-	27		하동군	
4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1	답	1,469	-	1,469		하동군	
48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8	답	54	-	5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19-4	정유채	
4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2	답	2,601	-	2,60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19-4	정유채	
5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3	답	438	-	438		하동군	
5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7	답	4,758	-	4,758		하동군	
5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9-2	답	1,244	-	1,244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09-35 삼보빌라 502호	최준화	
5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725-1	답	3,120	-	3,120	경남 진주시 망경로306번길 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진사	
5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4-1	구	194	-	194		하동군	
5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2	전	284	103	181		하동군	
5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3-1	구	85	7	78		하동군	
5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3-2	구	198	148	50		하동군	
5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25-3	구	83	68	15		경상남도	
5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9	구	1,003	849	154		국토교통부	
6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30	천	35,560	35,530	30		국토교통부	
6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31	도	1,223	1,198	25		국토교통부	
6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34-2	도	2,829	2,828	1		하동군	
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36-1	구	228	176	52		국토교통부	

토 지 조 서 (4)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잔여면적	권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6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1-3	도	1,990	1,602	388		경상남도(교육감)	
6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1	잡	1,776	1,765	11		하동군	
6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3	답	276	28	248		하동군	
6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4	답	305	-	305		하동군	
6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	구	2,198	439	1,759		국토교통부	
6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5	답	748	136	612		하동군	
7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6	답	495	-	495		하동군	
7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5-2	도	250	-	250		하동군	
7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5-3	답	383	-	383		하동군	
7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4	답	125	-	125		하동군	
7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	구	507	446	61		국토교통부	
7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3	도	1,217	1,202	15		국토교통부	
7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4	도	22	-	22		하동군	
7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5	도	77	19	58		하동군	
7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6	답	106	-	106		하동군	
7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7	답	42	-	42		하동군	
8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8	답	231	30	201		하동군	
8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9	답	84	37	47		하동군	
8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6	도	286	67	219		하동군	
8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7	답	121	-	121		하동군	
8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8	답	106	-	106		하동군	

토 지 조 서 (5)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잔여면적	권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8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9	답	79	75	4		하동군	
8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7	도	37	35	2		하동군	
8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5	도	747	746	1		하동군	
8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13	구	9,432	9,168	264		농림축산식품부	
8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335	도	1,578	1,509	69		농림축산식품부	
9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1-4	구	47	-	47		국토교통부	
9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1-6	구	2,273	247	2,026		국토교통부	
9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4	도	4,895	4,713	182		국토교통부	
9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7	도	998	772	226		국토교통부	
94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72-11	도	392	384	8		농림축산식품부	
95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1	구	8,901	5,721	3,180		농림축산식품부	
96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2	답	1,386	515	871		하동군	
9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4	도	90	29	61		하동군	
98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5	답	226	-	226		하동군	
9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6	답	380	-	380		하동군	
10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1	도	145	-	145		국토교통부	
10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2	도	213	32	181		국토교통부	
10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4	답	109	75	34		하동군	
10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5	도	448	7	441		농림축산식품부	
104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8-8	도	28	24	4		하동군	
105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76-1	답	3,012	2,253	759		경상남도	

토 지 조 서 (6)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잔여면적	권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06	경남 하동군 고천면 성평리	723	답	3,345	3,257	88		하동군	
107	경남 하동군 고천면 성평리	735	천	95,942	94,148	1,794		국토교통부	

국 유 지 집 계 표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 분		지 목 별												비 고
		임	구	답	대	도	천	잡	창	목	학	천	제	
국 유 지	필지	-	12	25	-	19	1	1	-	-	-	2	-	60
	면적	-	7,880	17,607	-	2,298	181	11	-	-	-	1,824	-	29,801

국 유 지 조 서 (1)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간여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3	답	3,254	72	3,182		하동군	
45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	답	2,580	-	2,580		하동군	
46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7	답	27	-	27		하동군	
4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1	답	1,469	-	1,469		하동군	
5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6-3	답	438	-	438		하동군	
5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7	답	4,758	-	4,758		하동군	
5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4-1	구	194	-	194		하동군	
5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2	전	284	103	181		하동군	
5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3-1	구	85	7	78		하동군	
5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3-2	구	198	148	50		하동군	
5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25-3	구	83	68	15		경상남도	
5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9	구	1,003	849	154		국토교통부	
6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30	천	35,560	35,530	30		국토교통부	
6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31	도	1,223	1,198	25		국토교통부	
6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34-2	도	2,829	2,828	1		하동군	
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36-1	구	228	176	52		국토교통부	
6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1-3	도	1,990	1,602	388		경상남도(교육감)	
6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1	잡	1,776	1,765	11		하동군	
6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3	답	276	28	248		하동군	
6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4	답	305	-	305		하동군	

국 유 지 조 서 (2)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간여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6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	구	2,198	439	1,759		국토교통부	
6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5	답	748	136	612		하동군	
7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6	답	495	-	495		하동군	
7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5-2	도	250	-	250		하동군	
7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5-3	답	383	-	383		하동군	
7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4	답	125	-	125		하동군	
7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	구	507	446	61		국토교통부	
7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3	도	1,217	1,202	15		국토교통부	
7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4	도	22	-	22		하동군	
7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5	도	77	19	58		하동군	
7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6	답	106	-	106		하동군	
7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7	답	42	-	42		하동군	
8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8	답	231	30	201		하동군	
8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9	답	84	37	47		하동군	
8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6	도	286	67	219		하동군	
8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7	답	121	-	121		하동군	
8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8	답	106	-	106		하동군	
8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9	답	79	75	4		하동군	
8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7	도	37	35	2		하동군	
8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5	도	747	746	1		하동군	

국 유 지 조 서 (3)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간여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8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13	구	9,432	9,168	264		농림축산식품부	
8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335	도	1,578	1,509	69		농림축산식품부	
9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1-4	구	47	-	47		국토교통부	
9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1-6	구	2,273	247	2,026		국토교통부	
9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4	도	4,895	4,713	182		국토교통부	
9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7	도	998	772	226		국토교통부	
94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72-11	도	392	384	8		농림축산식품부	
95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1	구	8,901	5,721	3,180		농림축산식품부	
96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2	답	1,386	515	871		하동군	
9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4	도	90	29	61		하동군	
98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5	답	226	-	226		하동군	
9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6	답	380	-	380		하동군	
10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1	도	145	-	145		국토교통부	
10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2	도	213	32	181		국토교통부	
10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4	답	109	75	34		하동군	
10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5	도	448	7	441		농림축산식품부	
104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8-8	도	28	24	4		하동군	
105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76-1	답	3,012	2,253	759		경상남도	
106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723	답	3,345	3,257	88		하동군	
10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735	천	95,942	94,148	1,794		국토교통부	

사 유 지 집 계 표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 분		지 목 별												비 고
		임	구	답	대	도	전	잡	창	목	학	천	제	
사 유 지	필지	-	-	40	-	7	-	-	-	-	-	-	-	47
	면적	-	-	14,727	-	804	-	-	-	-	-	-	-	15,531

사 유 지 조 서 (1)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간여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15	답	1,786	1,722	6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4	김종필	
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7	답	1,041	829	212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811-501	정창순	
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8	답	79	-	7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	설동근	
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5-1	답	1,944	1,636	308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아파트 18동 409호	문태기	
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4	답	1,911	1,876	3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	설동근	
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8-2	답	292	-	29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	설동근	
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3	답	3,468	3,158	31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57-13	정순익	
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3	답	67	-	6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8	정한균	
1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3	답	147	-	147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95-2	정한채	
1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1	답	1,617	1,551	66	경남 하동읍 광평리 231-3	정효채	
1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3	답	2,099	1,929	170	경남 하동읍 광평리 231-3	정효채	
1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7	답	120	52	68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95-2	정효채	
1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2	답	1,540	1,497	4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주성길 9-8	강택환	
1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5	답	1,297	1,192	10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8	김수남	
1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92-6	답	1,020	1,001	1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주성길 9-8	강택환	
1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6-2	도	63	-	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58	최남욱	
1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1	답	1,707	1,577	130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81-5	김민구	
1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4	답	2,604	2,408	19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2-4	정옥선	
2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	답	2,239	1,740	499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27	박순덕	
2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2-1	답	1,350	968	38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47	정갑채	

사 유 지 조 서 (2)

공사명 : 고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간여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3-2	도	69	-	69	통영군 통영읍 진량리 941	정규병	
2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4-2	도	965	438	527	진양군 내동면 삼계리	박재구	
2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4-1	도	36	-	36	진교면 백운리 608	정수월	
2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4-2	도	20	-	20	진교면 백운리 608	정수월	
2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5-2	도	99	87	12	서울 중랑구 중화동 195-2 우성타운 7동 101호	정한채	
2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4	도	353	276	7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31	홍미강	
2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5	답	782	560	22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47	정갑채	
29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2	답	1,776	1,735	4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47	정갑채	
30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2-1	답	1,925	1,917	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26	김진곤	
3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1-5	답	282	-	282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1-4	답	2,751	2,747	4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3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6	답	551	11	540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4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3	답	1,571	1,566	5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5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5	답	205	-	205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6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2	답	2,163	2,129	34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310번길 37-14	정경숙	
3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67-1	답	1,389	1,352	37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8	정창렬	
38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2	답	2,557	2,436	12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11	조영수	
3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	답	1,317	1,104	213	부산시 남구 망미동 881-27	김군자	
4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3-1	답	1,521	1,224	29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 102동 905호	정병국	
4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14-6	답	16	-	16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우병타운 106동 802호	김윤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하동군 고시 제 2019-22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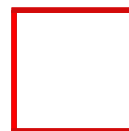
허가 대상자	성명 김덕* 1, 2, 3호 태양광발전소 김재*의 2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변경사항	지번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381(구) *인접: 서황리1149(답) - 13㎡ / 서황리 1138(전) - 15㎡ / 서황리 1140-2 -3㎡
	면적	31㎡
	목적	진출입로 확보
	기간	2019.12. 13. ~ 2020. 12. 31. (2년)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230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13.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90-26외 2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8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부여

업무 구분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0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90-26	2019 1213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수곡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755-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295-25	2019 1213		2009 0302	황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231-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가평길 10-32	2019 1213		2007 0618	가동이란 그 아름다운 음 향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다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632, 636-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광진터길 8	2019 1213		2008 0402	광진터라는 지명이름 반 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807-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155-96	2019 1213		2009 0302	금오산의 지명을 도로명 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508-1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52	2019 1213		2007 0618	대밭이질어 대밭땀이라고 불리워져 대밭땀길로 명 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99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27-50	2019 1213		2009 0302	동산골이라는 옛지명 반 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산16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56	2019 1213		2007 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 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1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밤골길 36	2019 1213		2009 0302	밤이 많이 생산되어 지역 적특성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산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88	2019 1213		2008 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 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933-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두전길 25	2019 1213		2007 0618	두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97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42	2019 1213		2007 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 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 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 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26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신기분정 길 80-10	2019 1213		2007 0618	옛날에암행어사가분정골 을지날때잠시쉬어분단장 을하였다하여분정골이라 는 유래가 있어 신기분 정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185-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8-5	2019 1213		2007 0618	원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116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이정길 10	2019 1213		2007 0618	이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9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지소2길 23-29	2019 1213		2009 0302	옛날 종이를 생산하던 마 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 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 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375-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1길 26-21	2019 1213		2009 0302	조선 인조때에 어떤 동자 가 흉년이 들면 피가 잘 자라 배고픔을 면할곳이 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350-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침점1길 15	2019 1213		2007 0618	김수로왕 일행이 행차 도 중 옷고름이 떨어져 이 곳에서 바느질을 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 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 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77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촌길 46-25	2019 1213		2007 0618	원동매 서남쪽 평지에 있 는 평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5-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4	2019 1213		2007 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24-1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30	2019 1213		2008 0402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24-9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34	2019 1213		2008 0402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건물번호폐지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8		2019 1213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폐지	2008 0402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2019 - 232 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주 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성명(법인명)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대표자 : 안현호)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219번지		
점 용 면 적	400m ²		
최 초 허 가 일	2019년 12월 17일		
점 용 기 간	2019. 12. 20. ~ 2019. 12. 20.(1일간)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하 동 군 수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공고

하동군 고시 제2019-23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지에**		
	대표자 (성명)	유 석 *	주소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소하천명		연화세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79-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79-2 *인접 : 비파리60-1		
	면적	1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2020. 1. 7. ~ 2025. 1. 6. ※기타사항 점용 허가조건 참조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235호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경상남도 하동군수

I.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을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다. 선박

-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 ④ 기준가격표 ⑤ 잔가율표 ⑥ 산출예시

라. 항공기

-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⑥ 산출예시

마. 시설물

-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사. 입목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산출방법
- ⑥ 적용요령

아. 어업권

- ① 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 ① 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234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09-48호(2009.12.7.), 제2010-44호(2010.12.31.), 제2011-34호(2011.8.1.), 제2012-68호(2012.12.27.), 제2013-48호(2013.9.6.), 제2014-50호(2014.6.18.), 제2016-36호(2016.2.25.), 제2017-34호(2017.2.27.), 제2017-209호(2017.12.28.), 제2018-70호(2018.5.16.), 제2018-214호(2018.12.28.)로 지정 및 변경 승인된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하 동 군 수

□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금성 조선농공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나. 면 적 : 145,335m²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9. 12. ~ 2019. 12.
- 변 경 : 2009. 12. ~ 2020. 6.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다. 변경사유 :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부진 및 조선업 불황의 지속과 갈사만 산업단지의 공사 중단 및 대우해양조선의 입주포기로 입주예정기업의 사업성 결여 및 부지 확정측량 결정 지연에 따른 변경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 연장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 비엔금성개발(주) 천 학 준
-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계	답	도로	잡	전	채방	기타
필지수	88	34	16	26	7	2	3
면 적 (㎡)	145,335	48,112	4,659	73,909	2,040	4,475	12,140
구성비 (%)	100.0	33.1	3.2	50.9	1.4	3.1	8.3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총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하동군	사유지	비고
필지수	88	8	1	10	69	
면 적 (m ²)	145,335	7,903	11,254	2,995	123,183	
구성비 (%)	100.0	5.4	7.7	2.1	84.8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335	-	145,335	100.0	
산업시설용지	107,527	-	107,527	74.0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공공시설용지	32,428	-	32,428	22.3	
도 로	9,875	-	9,875	6.8	
주차장	2,360	-	2,360	1.6	
공 원	7,760	-	7,760	5.3	
완충녹지	12,433	-	12,433	8.6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72	9,875	1	284	3,010	2	388	6,934	-	-	-
중로	2	388	6,934	-	-	-	2	388	6,934	-	-	-
소로	1	284	2,941	1	284	2,941	-	-	-	-	-	-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 농공단지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 농공단지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공원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4) 녹지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12,433	-	12,433	-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283	-	7,283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150	-	5,15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5) 상수도시설계획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484.4	계획용수량 : 484.4㎡/일
공 업 용 수	-	
생 활 용 수	484.4	

6) 오·폐수처리시설계획

○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계	56.8	계획오수량 : 56.8㎡/일
산 업 폐 수	1.8	
생 활 오 수	55.0	

7)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비 고
계	8,14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586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계획(백만원)			비 고 (변경사유 등)
		국비	지방비	민자	
기 정	27,595	-	-	27,595	· 공사비 27,595백만원
변 경	27,595	-	-	27,595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기 정 (백만원)	변 경(백만원)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총 투자비	27,595	27,595	8,965	11,378	4,805	2,447
설 계 비	1,100	1,100	1,100	-	-	-
공 사 비	14,978	14,978	-	9,990	3,106	1,882
보 상 비	6,840	6,840	6,840	-	-	-
감 리 비	753	753	218	197	196	142
부 대 비	400	400	65	150	150	35
제세공과금	10	10	-	1	1	8
관 리 비	890	890	409	174	128	179
물가변동비	828	828	-	392	393	43
건 설 이 자	1,796	1,796	333	474	831	158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07,527	-	107,527	100.0
제 조 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107,527	-	107,527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335	-	145,335	100.0	
산업시설용지	107,527	-	107,527	74.0	실수요자 사용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실수요자 사용
공공시설용지	32,428	-	32,428	22.3	
도 로	9,875	-	9,875	6.8	하동군에 귀속
주차장	2,360	-	2,360	1.6	하동군에 귀속
공 원	7,760	-	7,760	5.3	하동군에 귀속
완충녹지	12,433	-	12,433	8.6	하동군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실수요자 자체관리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호선	B=15.0m		180.0m		하동군에 귀속	
	중로 2-2 호선	B=15.0m		208.0m		"	
	소로 1-1 호선	B=10.0m		284.0m		"	
	도로 L형 측구			1,237.0m		"	
구조물	보강토 옹벽			83.0m		"	
	L형 옹벽	H=1.5~5.5m		46.0m		"	
우수	우수관로	D450		426.0m		"	
	우수받이	TYPE-A,B		48EA		"	
	우수연결관	D300		267.0m		"	
	우수맨홀	GRP 1호		6개소		"	
	접속T형관	D450X300		30개소		"	
오수	오수관로	D200		79본		"	
	오수맨홀	GRP 1호		11개소		"	
	오수처리장			1개소		실수요자 자체관리	
상수	상수관로	D80		379.0m		하동군에 귀속	
	제수변			10개소		"	
	소화전	지상식소화전		2개소		"	
포장	ASP포장	#78		59.6a		"	
부대	보도용난간	H1.0 X W2.0		66경간		"	
전기	가로등			13본		"	

14.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145,335	-	145,335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금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145,335	-	145,335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335	-	145,335	100.0	
산업시설용지	107,527	-	107,527	74.0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공공시설용지	32,428	-	32,428	22.3	
도 로	9,875	-	9,875	6.8	
주차장	2,360	-	2,360	1.6	
공 원	7,760	-	7,760	5.3	
완충녹지	12,433	-	12,433	8.6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72	9,875	1	284	3,010	2	388	6,934	-	-	-
중로	2	388	6,934	-	-	-	2	388	6,934	-	-	-
소로	1	284	2,941	1	284	2,941	-	-	-	-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 농공단지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 농공단지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다)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라) 녹지 결정조서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12,433	-	12,433	-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283	-	7,283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150	-	5,15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12,907			112,907	
-	1BL	112,907	1BL-1	갈사리 204-1	76,877	산업시설용지
			1BL-2	갈사리 202-18	7,180	
			1BL-3	갈사리 202-1	5,470	
			1BL-4	갈사리 221-1	18,000	
			1BL-5	갈사리 204-6	4,680	지원시설용지
			1BL-6	갈사리 204-13	700	오수처리시설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BL-1 1BL-2 1BL-3 1BL-4	용도	·허용용도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카’호 및 ‘타’호의 공장, ‘파’호의 창고시설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	1BL-5	용도	·허용용도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나’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다’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	1BL-6	용도	·허용용도 -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제어 요소	적용구간 (위치)	계획내용	비 고
-	공공 보행통로	산업시설용지내 (중로2-2호선 ~완충녹지①)	·다중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보 행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계획함 ·공공보행통로 폭 : 3m이상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7,760	-	7,760	
시설면적계	998	-	998	시설율 : 12.9%
건축 면적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760	-	7,760	
도로 및 광장	998	-	998	
녹 지	6,762	-	6,762	녹지율 : 87.1%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998	-	-	-	
기정	1	도로	-	743	-	-	-	
기정	2	중앙광장	-	117	-	-	-	
기정	3	휴게광장	-	138	-	-	-	

나)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6,762	-	-	-	
기정	-	녹지	-	6,762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			417	743	-	-	417	743
소 로	1류	기정	-	-	-	-	-	-
	2류	기정	-	-	-	-	-	-
	3류	기정	417	743	-	-	417	743

4) 세부도로조서

가)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합 계					417	743	-			
기정	소로	3	1	3.0	32	106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2	3.0	68	222	연결로	소로3-1	중앙광장	
기정	소로	3	3	3.0	18	60	연결로	중앙광장	소로3-7	
기정	소로	3	4	2.0	31	69	산책로	소로3-2	소로3-5	
기정	소로	3	5	2.0	16	29	산책로	소로3-4	휴게광장	
기정	소로	3	6	2.0	13	25	산책로	휴게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7	1.5	124	54	산책로	소로3-2	소로3-1	
기정	소로	3	8	1.5	115	178	진입로	서측경계	남측경계	

하동군 고시 제2019-236호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하 동 군 수

- 1. 사 업 명 :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2. 사업목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 특화 발전 도모
- 3. 총사업비 : 1,894,000천원(국비 127,000, 도비 17,000, 군비 1,750,000)
- 4. 사업내용

구 분	단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계	6개	1,894,000	
기초생활기반확충 (H/W)	갈사커뮤니티센터	570,000	543㎡
	갈사 명선쉼터	30,000	131㎡
	갈사 연막쉼터	78,000	298㎡
지역경관개선 (H/W)	해안산책로 조성	984,000	1.32km
지역역량강화 (S/W)	교육,컨설팅,H/W활성화	80,000	1식
부대비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2,000	1식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7. 관계도서배치 : 관련 자료는 하동군청 해양개발부서(Tel : 055-880-2444)에서 열람가능 하며 해당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사업명 :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세 부 사업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갈사커뮤니티센터 조성	금성면 갈사리	136-2	도로	1,962	10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금성면 갈사리	136-3	잡종지	519	76	국(기획재정부)	-	
	금성면 갈사리	142-16	잡종지	213	213	이*호	금성면	
	금성면 갈사리	142-30	잡종지	90	90	국(재정경제부)	-	
	금성면 갈사리	142-32	잡종지	305	24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금성면 갈사리	142-39	잡종지	31	31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갈사명선쉼터 조성	금성면 갈사리	682-19	전	131	131	국(재정경제부)	-	
갈사연막쉼터 조성	금성면 갈사리	136-2	도로	1,962	198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금성면 갈사리	136-3	잡종지	519	100	국(기획재정부)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237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길목길 203		
성명(법인명)	객길어촌계장 김평규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진정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붙임		
점용면적	10,000㎡		
최초허가일	2019. 12. 23.		
점용기간	2019년 12월 23일 ~ 2024년 12월 23일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가조건	별도 붙임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하동군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하동군 고시 제2019-238호					
개 간 사 업 시 행 계 획 (변경) 승 인 서					
사 업 시 행 자	성 명	김선*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286-101			
개 간 장 소	군	면		리	
	하동	청암		묵계	
개 간 의 용 도	고랭지 배추 식재하여 영농하고자 함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산195-11	임	1,895㎡		
	산197-2		5㎡		
지 정 착 수 시 기	2018. 11. ~ 2019. 12. 31				
공 사 비 예 정 액	4,000만원				
승 인 조 건	개간사업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p>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12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m ²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청암	목계	산195-11	임야	6,215m ²	1,895m ²					
			산197-2	임야	102m ²	5m ²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19 - 239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하 동 군 수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용

시설명	위 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일	고시사유	비고
궁향초등학교	하동군 금성면 궁향리 지내 (L=407m)	2019. 12. 30.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신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055-880-2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19-1244 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안 이유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 나. 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사항 명확히 규정 (안 제5조)
 - 다. 안전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7조)
 - 라. 간사에 관한 규칙 개정 (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 880-2072, FAX 880-2078, e-mail:bobcsy@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4.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7. 제10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경제전략과장, 민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축산과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건 심의기준)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반려·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 6.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 7.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제8조(안건심의 결정) ①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② 민원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하동군 민원실무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군수는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서류의 적합 여부 등 형식 요건 심사
2.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처리담당자 지정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의 협의
4. 여러 차례의 심의회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상정 건의

②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명					
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처리주무부서			관계부서		
민원요지					
심의안건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민원처리주무부서의장

(서명)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원명				
민원요지				
심의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구분	직위	성명	의견		서명
			가	부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실무심의회) 회의록

-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위원장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 공고 제2019 - 1315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안 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 내용
 - 농업기계 임대료 인상(안 제8조제2항 별표 1)
 - 농업기계 임대사업 정책방향 반영(안 제4조제6항, 안 제20조)
 -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 이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처분기준 명확화
 -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4조제2항, 제3항, 제4항)
 - 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 축소(안 제16조, 안 제1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하동군(농축산과, 전화 880-2696, FAX 880-2419, e-mail hlsung@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를 ““임대 농업 기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이하 “임차자”라 한다)”를 “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를 “임대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동군의 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동군”을 “군”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1일(8시간 기준) / 단위 : 원]

기종	규격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 100만원 미만	10,000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000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000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000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3,000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8,000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2,000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6,500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41,000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6,000	
		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5,000	
		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2,000	
		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94,000	
		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11,000	
		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36,000	
		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57,000	
		17)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166,000	
		18) 5,000만원 이상	179,00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 1,000원		
임대농업기계 운반비		전지역 40,000원/왕복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 1. 농기계명 :
- 2. 수 량 :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4. 작업종류 :
- 5. 작 업 량 :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업기계를 망실·훼손한 때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 사용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남/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u>하동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u></p> <p>3. "<u>임대농업기계</u>"(이하 "<u>농업기계</u>"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p> <p>4. (생 략)</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u>)</u>----- .</p> <p>3. "<u>임대</u> <u>농업기계</u> "<u>-----</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 및 관리) ① <u>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u>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군비, 임대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p> <p>② ~ ⑤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운영 및 관리) ① <u>임대사업장</u>-----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

⑤ (생략)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군수에게 조정 승인을 요청한다.

1.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

③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
-----.

④ -----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농축산과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대료 관리)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하동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8조(임대료 관리) ① -----

----- 군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농업기계화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335호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하동군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1인1실 3만원/일, 2인1실 2만원/일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단조성과, 전화880-2613, FAX 880-2619, e-mail : smreo2ne@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 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하동군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하동군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라 한다.

② 게스트하우스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26-2에 둔다.

제3조(운영) ① 게스트하우스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게스트하우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게스트하우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료) ① 게스트하우스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 표와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게스트하우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용료는 인근 지역 전·월세 금액,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가 정하며, 군수에 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 1. 게스트하우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 우
-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 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가.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를 위한 상주 인력이 사용하는 경우
 - 나. 각종 유치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사용하는 경우
- 3.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및 관내 사회적 기업 상 시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30일 이상 사용자는 감면 또는 면제된 사용료의 30%를 추가로 할

인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운영) ① 게스트하우스를 위탁운영할 경우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비용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각 분기별 말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사용자의 숙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운영수칙)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게스트하우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 시설의 일부를 숙박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주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

3. 게스트하우스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 요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제10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3. 수탁자가 게스트하우스를 부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게스트하우스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공익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 표】

사용료(제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 1일	비 고
숙박 시설	1인1실	30,000원	▣ 1일(박) :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1인1실 (장애인실)	20,000원	
	2인1실	20,000원	

※ 사용료는 1명 기준 금액임.

[별지 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주택)		
	휴대전화)		
E-mail			
면제(감면)사유			
사용기간			

「하동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 하

일련번호:

사용(변경) 허가 통지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용기간	20 ~ 20 (박 일)		
사 용 료 (감면금액)	원		

위와 같이 게스트하우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9- 1222호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판소리체험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하 동 군 수

I. 민간위탁 개요

1. 위탁기간: 2020. 1월 ~ 2024. 12. 31.(5년)
2. 대상시설

시설명	시설면적(m ²)		주요시설	위탁형태	비고
	대지	건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기념관	4,634	506.08	전시관,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보조금 지원	

3. 수탁자격 : 법인, 단체, 개인
 - 가. 개인 :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나. 법인, 단체 : 모집공고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경우

II. 신청서 접수안내

1. 공 고
 - 가. 기 간 : 2019. 11. 27. ~ 2019. 12. 6
 - 나.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및 지역일간지 공고
2. 사업계획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9. 12.4(수) ~ 12. 9(월). 18:00
 - 나. 장 소 :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67)
 - 다. 접수방법 : 본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 라.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 수탁 신청서(붙임 5호서식)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3)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4)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부.

- 5) 각종 자격 및 경력증명서 1부.
- 6) 법인, 단체, 개인의 자산현황(증빙자료 포함) 1부
- 7) 개인 및 단체 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0부
- 8) 사업계획 요약서(A4 용지 10매 이내) 10부
- 9) 재정운영계획 요약서(A4 용지 3매 이내) 10부
 - 수입계획 : 위탁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
 - 지출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등
- 10) 사업계획서 10부 (PPT용 자료 별도 제출)
 - ※ PPT용은 10분 이내 보고자료로 작성한다.

3. 사업계획서 작성

가. 규격은 A4용지(백상지) 종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체계는 나항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신청자의 재량으로 한다.

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 목표 및 비전 제시
- 2) 사업계획
 - 시설의 고유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내용 및 횟수, 년/월간 추진계획 등
 - 국가 및 타 기관 사업연계추진 외부자본 유치 등
 - 군민서비스 강화 계획
- 3) 재정 운영계획
 - 총 수입계획 : 위탁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함
 - ※ 수익시설은 수입금, 자부담 등으로 함
 - 총 지출계획 :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 홍보비 등으로 함
- 4) 조직 운영계획
 - 총 관리인원, 분야별 인원, 조직구성도 등
 - 분야별 업무분장
 -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등
- 5) 시설 활용 및 관리계획
- 6) 홍보 및 마케팅계획
- 7) 판소리체험관 활성화 방안 등
- 8) 법인(단체), 개인 소개

Ⅲ. 운영자 선정기준과 방법

1.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 근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2. 선정위원회 운영

가. 개최일시: 2019. 12. 18.(수). 14:00 예정

나. 장 소: 하동군청 소회의실

다. 심사방법

- 1) 신청자의 제안설명 청취, 질의·응답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거쳐 선정위원별 평점 후 최고득점자를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
- 2)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단독신청도 동일)
- 3) 신청자 제안설명: 신청자별 PPT 각 10분 설명(질의응답 포함 20분 이내)

※ 우대사항

- 판소리(국악)전수·체험관 운영 유경험자
- 판소리 명창 중 무형문화재(국,시·도) 보유자

라. 설명순서 : 접수순

3.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

가. 정성적(우대사항 포함) 평가(100점)

나.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사업계획서와 제출된 관련자료 등에 의한 심사로 평가 함

다. 선정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

4. 수탁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Ⅳ. 위탁운영 조건

1. 수탁자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보조금지원시설: 군 보조금, 수익금, 자부담으로 운영하며, 군 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함

3. 건물수선 유지관리

가.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분 수선: 하동군

나. 이용, 사용상 소규모 수선: 수탁운영자

4. 운영물품 및 집기

- 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현 보유시설, 물품 및 집기 등을 인계인수
- 5.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미 이행하거나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동군의 심사평가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6.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보일러, 배수시설, 화장실 등 전체시설 점검 후 운영
 - ※ 시설 개보수로 불가피한 운영중단기간은 위탁(수탁)기간에 포함
- 7. 위탁받은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중도 해지 시 수탁 관리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하여야 함
- 8.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하동군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는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9. 지원시설은 기존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취득, 기증, 기탁 등으로 증가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유익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10. 유료위탁시설 중 교육관, 한옥체험관의 인계인수 품목 및 수량은 수탁기간 만료 후 동일품목 및 수량으로 반환
- 11.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할 수 있음

V. 기타 사항

- 1.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3.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4. 기타 응모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문화체육과(☎055-880-2367)로 문의.

하동군 공고 제2019-1245호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의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구분	순위	회사명	대표	소재지	공법명	비고
성두 면단위	1	(주)조은환경	조현철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J-SBR	채택
단천 소규모	1	(주)조은환경	조현철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J-SBR	채택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호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서류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 행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전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대상직렬 및 인원

- 대상직렬 : 타 직렬 → 사회복지직
- 대상직급 및 인원 : 사회복지직 6급 0명

3. 응 시 자 격

- 응시대상자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로 정하는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증

계 급 직 렬	직 류	5급 이상	6·7급	8·9급	비 고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4. 시 험 방 법

- 합격기준 : 자격증 검증(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최종합격
- 접수기간 : 2019. 12. 16.(월) ~ 12. 18.(수) / 3일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자격검증에 대한 동의서

5. 시 험 일 정

- 시행계획 공고 : 2019. 12. 5.
- 서류전형 접수 : 2019. 12. 16. ~ 12. 18.
- 서류전형 심사 : 2019. 12. 2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2. 24. 예정

6. 붙 임 문 서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기	숙기	한글숙기 1급	한글숙기 1·2급	한글숙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안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농화학)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향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향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향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향해		기술사(조선) 1·2급 향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향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향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 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사(전기,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붙임 3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자격증, 학위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4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 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 5.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 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2013. 11. 20.>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6.12.23.규115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제1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1281호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판소리체험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I. 민간위탁 개요

1. 위탁기간: 2020. 1월 ~ 2024. 12. 31.(5년)
2. 대상시설

시설명	시설면적(m ²)		주요시설	위탁형태	비고
	대지	건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기념관	4,634	506.08	전시관,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보조금 지원	

3. 수탁자격 : 법인, 단체, 개인
 - 가. 개인 :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나. 법인, 단체 : 모집공고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경우

II. 신청서 접수안내

1. 공 고
 - 가. 기 간 : 2019. 12. 10. ~ 2019. 12. 16
 - 나.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2. 사업계획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9. 12.10(화) ~ 12. 16(월). 18:00
 - 나. 장 소 :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67)
 - 다. 접수방법 : 본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 라.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 수탁 신청서(붙임 5호서식)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3)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4)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부.

- 5) 각종 자격 및 경력증명서 1부.
- 6) 법인, 단체, 개인의 자산현황(증빙자료 포함) 1부
- 7) 개인 및 단체 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0부
- 8) 사업계획 요약서(A4 용지 10매 이내) 10부
- 9) 재정운영계획 요약서(A4 용지 3매 이내) 10부
 - 수입계획 : 위탁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
 - 지출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등
- 10) 사업계획서 10부 (PPT용 자료 별도 제출)
 - ※ PPT용은 10분 이내 보고자료로 작성한다.

3. 사업계획서 작성

가. 규격은 A4용지(백상지) 종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체계는 나항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신청자의 재량으로 한다.

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 목표 및 비전 제시
- 2) 사업계획
 - 시설의 고유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내용 및 횟수, 년/월간 추진계획 등
 - 국가 및 타 기관 사업연계추진 외부자본 유치 등
 - 군민서비스 강화 계획
- 3) 재정 운영계획
 - 총 수입계획 : 위탁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함
 - ※ 수익시설은 수입금, 자부담 등으로 함
 - 총 지출계획 :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 홍보비 등으로 함
- 4) 조직 운영계획
 - 총 관리인원, 분야별 인원, 조직구성도 등
 - 분야별 업무분장
 -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등
- 5) 시설 활용 및 관리계획
- 6) 홍보 및 마케팅계획
- 7) 판소리체험관 활성화 방안 등
- 8) 법인(단체), 개인 소개

Ⅲ. 운영자 선정기준과 방법

1.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 근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2. 선정위원회 운영

가. 개최일시: 2019. 12. 18.(수). 14:00 예정

나. 장 소: 하동군청 소회의실

다. 심사방법

- 1) 신청자의 제안설명 청취, 질의·응답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거쳐 선정위원별 평점 후 최고득점자를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
- 2)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단독신청도 동일)
- 3) 신청자 제안설명: 신청자별 PPT 각 10분 설명(질의응답 포함 20분 이내)

※ 우대사항

- 판소리(국악)전수·체험관 운영 유경험자
- 판소리 명창 중 무형문화재(국,시·도) 보유자

라. 설명순서 : 접수순

3.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

가. 정성적(우대사항 포함) 평가(100점)

나.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사업계획서와 제출된 관련자료 등에 의한 심사로 평가 함

다. 선정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

4. 수탁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IV. 위탁운영 조건

1. 수탁자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보조금지원시설: 군 보조금, 수익금, 자부담으로 운영하며, 군 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함

3. 건물수선 유지관리

가.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분 수선: 하동군

나. 이용, 사용상 소규모 수선: 수탁운영자

4. 운영물품 및 집기

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현 보유시설, 물품 및 집기 등을 인계인수

5.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미 이행하거나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동군의 심사평가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6.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보일러, 배수시설, 화장실 등 전체시설 점검 후 운영
 ※ 시설 개보수로 불가피한 운영중단기간은 위탁(수탁)기간에 포함
- 7. 위탁받은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중도 해지 시 수탁 관리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하여야 함
- 8.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하동군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는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9. 지원시설은 기존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취득, 기증, 기탁 등으로 증가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유익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10. 유료위탁시설 중 교육관, 한옥체험관의 인계인수 품목 및 수량은 수탁기간 만료 후 동일품목 및 수량으로 반환
- 11.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할 수 있음

V. 기타 사항

- 1.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3.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4. 기타 응모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문화체육과(☎055-880-2367)로 문의.

하동군 공고 제2019 - 1282호

안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안성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1.

하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12. 11. ~ 2019. 12. 26.(15일간)
2. 사 업 명 : 안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827-3번지 일원
4. 지적조서 : **【붙임】**
5. 관계서류 공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나. 공람기간 : 2019. 12. 11. ~ 2019. 12. 26.(15일간)
 - 다. 공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6. 문 의 처 :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부서(☎055-880-2084)

붙 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안성지구 지적확정조서

번호	중전 토지					산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주소	
1	적량	고절	946-13	답	56	적량	고절	946-13	답	80.0	24.0		강*이, 강*수, 강*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번길 ** ***동****호	
2	적량	고절	923-3	임야	96	적량	고절	923-3	임야	82.3		13.7	국(국*청)		
3	적량	고절	823-3	제방	2,657	적량	고절	823-3	제방	1,892.7		764.3	국(국***부)		
4	적량	고절	825-7	답	133	적량	고절	825-7	답	283.6	150.6		국(국***부)		
5	적량	고절	1259-1	구거	3,453	적량	고절	1259-1	구거	3,526.3	113.8		국(국***부)		
						적량	고절	1259-3	구거	41.9	1.4		국(국***부)		
6	적량	고절	1279	도로	499	적량	고절	1279	도로	231.2		267.8	국(국***부)		
7	적량	고절	1279-4	도로	269	적량	고절	1279-4	도로	136.3		132.7	국(국***부)		
8	적량	고절	1280-3	도로	150	적량	고절	1280-3	도로	57.5		92.5	국(국***부)		
9	적량	고절	1282	도로	116	적량	고절	1282	도로	114.5		1.5	국(국***부)		
10	적량	고절	1283	도로	215	적량	고절	1283	도로	127		87.4	국(국***부)		

									.6					
11	적 량	고 절	12 84 -1	도 로	1,6 79	적 량	고 절	12 84 -1	도 로	742 .9		79. 9	국(국 ***부)	
						적 량	고 절	12 84 -3	도 로	23. 9		2.6	국(국 ***부)	
						적 량	고 절	12 84 -4	도 로	16. 2		1.7	국(국 ***부)	
						적 량	고 절	12 84 -5	도 로	582 .1		62. 6	국(국 ***부)	
						적 량	고 절	12 84 -6	도 로	150 .8		16. 2	국(국 ***부)	
12	적 량	고 절	92 1- 2	임 야	33	적 량	고 절	92 1- 2	임 야		33. 0	국(기 ***부)		
13	적 량	고 절	10 75 -3	답	813	적 량	고 절	10 75 -3	답	755 .7	57. 3	국(기 ***부)		
14	적 량	고 절	10 80	도 로	236	적 량	고 절	10 80	도 로	131 .7	104 .3	국(농 ***** 부)		
15	적 량	고 절	12 78 -1	구 거	1,6 75	적 량	고 절	12 78 -1	구 거	1,3 59. 0	316 .0	국(농 ***** 부)		
16	적 량	고 절	93 2- 3	답	13	적 량	고 절	93 2- 3	답	13. 0		김*석	***	
17	적 량	고 절	85 3	임 야	119	적 량	고 절	85 3	임 야	119 .0		김*태	***-*	
18	적 량	고 절	91 4- 1	대	241	적 량	고 절	91 4- 1	대	262 .0	21. 0	김*순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	
19	적 량	고 절	85 8	대	377	적 량	고 절	85 8	대	70. 6	306 .4	김*홍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20	적 량	고 절	85 9	대	278	적 량	고 절	85 9	대	527 .6	249 .6	김*홍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21	적 고	산	임			적 고	13	임			509	김*문	서리	

	량	절	14 3	야	2,3 80	량	절	17	야	1,8 70. 8						
22	적 량	고 절	86 8- 26	도 로	62	적 량	고 절	86 8- 26	도 로			62. 0	김*춘	***		
23	적 량	고 절	86 8- 27	도 로	6	적 량	고 절	86 8- 27	도 로			6.0	김*춘	***		
24	적 량	고 절	86 3- 2	전	159	적 량	고 절	86 3- 2	전	164 .2	5.2		김*석	***-**		
25	적 량	고 절	86 3- 4	전	205	적 량	고 절	86 3- 4	전	229 .6	24. 6		김*석	***-**		
26	적 량	고 절	91 4- 4	대	314	적 량	고 절	91 4- 4	대	467 .5	81. 5		김*석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27	적 량	고 절	91 5	대	235											
28	적 량	고 절	91 6	잡 종 지	271	적 량	고 절	91 6	잡 종 지	233 .8	37. 2		김*석	***-**		
29	적 량	고 절	94 6- 1	답	306	적 량	고 절	94 6- 1	답	306 .0			김*곤, 김*곤	***		
30	적 량	고 절	산 13 0- 5	도 로	356	적 량	고 절	산 13 0- 5	도 로		356 .0		김*곤	***		
31	적 량	고 절	산 13 0- 6	임 야	231	적 량	고 절	13 18	임 야	382 .3	202 .1		김*곤	***		
						적 량	고 절	13 18 -1	임 야	107 .7	56. 9		김*곤	***		
32	적 량	고 절	95 9	전	886	적 량	고 절	95 9	전	886 .0			김*채	부산 중구 동광 동 *가 *		
33	적 량	고 절	83 4	임 야	387	적 량	고 절	83 4	임 야	454 .6	67. 6		김*권	***		
34	적 량	고 절	84 0	대	512	적 량	고 절	84 0	대	471 .6	40. 4		김*권	***		

35	적 량	고 절	84 3	대	403	적 량	고 절	84 3	대	489 .2	86. 2	김*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36	적 량	고 절	82 5- 4	도 로	42	적 량	고 절	82 5- 4	도 로		42. 0	김*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
37	적 량	고 절	86 8- 18	전	575	적 량	고 절	86 8- 18	전	342 .7	232 .3	김*자	***-**
38	적 량	고 절	86 8- 19	대	241	적 량	고 절	86 8- 19	대	335 .5	94. 5	김*자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39	적 량	고 절	92 2- 2	대	192	적 량	고 절	92 2- 2	대	192 .0	0.0	김*한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 ***동 ***호
40	적 량	고 절	92 5- 3	대	307	적 량	고 절	92 5- 3	대	307 .0	0.0	김*한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 ***동 ***호
41	적 량	고 절	94 4- 2	대	338	적 량	고 절	94 4- 2	대	348 .9	10. 9	김*선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 -***
42	적 량	고 절	88 2	전	126	적 량	고 절	88 2	전	79. 1	46. 9	김*수	***
43	적 량	고 절	88 2- 1	도 로	132	적 량	고 절	88 2- 1	도 로		132 .0	김*수	***
44	적 량	고 절	97 6	전	198	적 량	고 절	97 6	전	198 .0		김*조	고절리
45	적 량	고 절	10 75 -1	답	835	적 량	고 절	10 75 -1	답	835 .0		김*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길 *
46	적 량	고 절	83 3	대	585	적 량	고 절	83 3	대	634 .5	49. 5	김*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47	적 량	고 절	91 0	묘 지	271	적 량	고 절	91 0	묘 지	271 .0		김*은	동리
48	적 량	고 절	86 6	전	185	적 량	고 절	86 6	전	185 .0		김*도	***
49	적 량	고 절	93 1- 2	답	330	적 량	고 절	93 1- 2	답	680 .1	350 .1	김*기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 ** (아주 동)

50	적 량	고 절	93 1- 10	답	824	적 량	고 절	93 1- 10	답	521 .9		302 .1	김*기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 ** (아주 동)
51	적 량	고 절	79 0- 1	전	721	적 량	고 절	79 0- 1	전	721 .0			김*수	***
52	적 량	고 절	81 1	전	36	적 량	고 절	81 1	전	36. 0			김*오	***
53	적 량	고 절	86 8- 25	도 로	18	적 량	고 절	86 8- 25	도 로			18. 0	김*오	***
54	적 량	고 절	83 5	대	66	적 량	고 절	83 6	대	442 .3	19. 3		김*나	하동읍 읍내리 **** 선경빌라 ***호
55	적 량	고 절	83 6	대	225									
56	적 량	고 절	85 2	대	132									
57	적 량	고 절	83 0	답	1,1 77	적 량	고 절	83 0	답	1,2 57. 2	80. 2		김*곤	****-
58	적 량	고 절	85 1	전	602	적 량	고 절	85 1	전	414 .5		187 .5	김*곤	****-
59	적 량	고 절	85 7- 2	대	466	적 량	고 절	85 7- 2	대	538 .7	72. 7		김*곤	****-
60	적 량	고 절	92 5- 2	대	129	적 량	고 절	92 5- 2	대	154 .3	25. 3		노*규	부산광역시 사하 구 신평동 *** 삼 창강변아파트 *** 동 ****호
61	적 량	고 절	86 8- 22	도 로	27	적 량	고 절	86 8- 22	도 로			27. 0	박*주	***
62	적 량	고 절	92 5- 1	대	231	적 량	고 절	92 5- 1	대	664 .3	94. 3		박*주	***
63	적 량	고 절	94 7- 2	대	339									
64	적 량	고 절	82 9	임 야	69	적 량	고 절	82 9	임 야	69. 0			박*도	고절리
65	적 량	고 절	산	임		적 량	고 절	13	임		59.		박*백	***

	량	절	14 4- 5	야	567	량	절	13	야	353 .9	0				
						적 량	고 절	13 13 -1	임 야	326 .5	54. 4		박*백	***	
66	적 량	고 절	82 6	답	1,8 14	적 량	고 절	82 6	답	1,8 14. 0			박*식	울산광역시 울주 군 서생면 해맞이 로 ***-**	
67	적 량	고 절	86 1	대	244	적 량	고 절	86 1	대	244 .0			박*식	***-**	
68	적 량	고 절	산 14 2	임 야	3,2 73	적 량	고 절	13 16	임 야	2,8 21. 9	451 .1		박*식, 박*식, 박*식, 박*식	***	
69	적 량	고 절	86 8- 21	도 로	32	적 량	고 절	86 8- 21	도 로		32. 0		박*원	***	
70	적 량	고 절	86 8- 23	도 로	19	적 량	고 절	86 8- 23	도 로		19. 0		박*원	***	
71	적 량	고 절	87 0- 1	도 로	3	적 량	고 절	87 0- 1	도 로		3.0		박*원	***	
72	적 량	고 절	82 8	답	707	적 량	고 절	82 8	답	692 .3	14. 7		박*만	***	
73	적 량	고 절	92 0	전	106	적 량	고 절	92 0	전	193 .4	87. 4		박*만	***	
74	적 량	고 절	산 14 4- 4	임 야	309	적 량	고 절	13 14	임 야	242 .8	66. 2		박*만	***	
75	적 량	고 절	91 4- 6	대	608	적 량	고 절	91 4- 6	대	831 .5	223 .5		박*원, 박*원, 박*식, 박*식, 박*식, 박*식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76	적 량	고 절	91 4-	대	506	적 량	고 절	91 4-	대	475	30. 7		박*원	***-**	

			3				3		.3				
77	적 량	고 절	91 4- 5	대	235	적 량	고 절	91 4- 5	대	235 .0			박*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길 ***-***
78	적 량	고 절	95 0	임 야	433	적 량	고 절	95 0	임 야	433 .0			박*갑 고절리
79	적 량	고 절	86 8- 15	전	434	적 량	고 절	86 8- 15	전	434 .0			박*재 **
80	적 량	고 절	86 8- 28	도 로	2	적 량	고 절	86 8- 28	도 로	2.0			박*재 **
81	적 량	고 절	91 1	전	271	적 량	고 절	91 1	전	310 .9	39. 9		박*만 ***
82	적 량	고 절	91 4- 2	대	169	적 량	고 절	91 4- 2	대	229 .3	60. 3		박*만 ***
83	적 량	고 절	91 6- 1	잡 종 지	165	적 량	고 절	91 6- 1	잡 종 지	92. 6	72. 4		박*만 ***
84	적 량	고 절	92 2- 1	대	159	적 량	고 절	92 2- 1	대	159 .0			박*만 ***
85	적 량	고 절	92 3- 2	임 야	66	적 량	고 절	92 3- 2	임 야	49. 7	16. 3		박*만 ***
86	적 량	고 절	92 4	대	441	적 량	고 절	92 4	대	588 .9	147 .9		박*만 ***
87	적 량	고 절	94 7- 3	임 야	18	적 량	고 절	94 7- 3	임 야	18. 0			박*원, 박*식, 박*윤 ***-*
88	적 량	고 절	97 5	전	99	적 량	고 절	97 5	전	99. 0			박*식 ***
89	적 량	고 절	82 7	답	485	적 량	고 절	82 7	답	464 .7	20. 3		박*식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 한주 럭키타운 *-***
90	적 량	고 절	91 3	임 야	43	적 량	고 절	91 3	임 야		43. 0		박*식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 한주 럭키타운 *-***
91	적 량	고 절	94 6-	전	3	적 량	고 절	94 6-	전		3.0		박*식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 한주

			11					11								럭키타운 *~***
92	적 량	고 절	93 1- 4	답	23	적 량	고 절	93 1- 4	답	23. 0				박*식, 박*창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길 ** **동 ***호 (봉덕 동 한우그랜드)
93	적 량	고 절	93 1- 5	대	390	적 량	고 절	93 1- 5	대	575 .6	185 .6			박*식, 허*희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길 ** **동 ***호 (봉덕 동 한우그랜드)
94	적 량	고 절	93 1- 7	답	87	적 량	고 절	93 1- 7	답	87. 0				박*식, 박*창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길 ** **동 ***호 (봉덕 동 한우그랜드)
95	적 량	고 절	82 3	잡 종 지	1,2 00	적 량	고 절	82 3	잡 종 지	1,6 87. 3	487 .3			박*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서로 ** ***동 ****호 (양덕동 메트로시티)
96	적 량	고 절	94 4	목 장 용 지	538	적 량	고 절	94 4	목 장 용 지	267 .9	270 .1			박*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
97	적 량	고 절	92 1- 4	대	264	적 량	고 절	92 1- 4	대	635 .3	212 .3			박*식		***~*
98	적 량	고 절	92 1- 5	대	159											
99	적 량	고 절	산 14 4- 1	임 야	816	적 량	고 절	13 15	임 야	682 .9	133 .1			박*식		***~*
100	적 량	고 절	92 1- 1	대	555	적 량	고 절	92 1- 1	대	555 .0				박*태		***~*
101	적 량	고 절	산 14 4- 6	임 야	1,3 77	적 량	고 절	13 12	임 야	1,0 72. 2	304 .8			박*태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02	적 량	고 절	산 15 5	임 야	1,1 24	적 량	고 절	13 10	임 야	559 .8	39. 2			박*태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적 량	고 절	13 10	임 야	490	34. 3		박*태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1		.7							**-**
103	적 량	고 결	79 0- 2	임 야	3,4 28	적 량	고 결	79 0- 2	임 야	3,3 77. 8		50. 2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04	적 량	고 결	85 4	전	641	적 량	고 결	85 4	전	641 .0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05	적 량	고 결	85 5	전	364	적 량	고 결	85 5	전	364 .0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06	적 량	고 결	85 6	전	797	적 량	고 결	85 6	전	789 .3		7.7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07	적 량	고 결	85 7- 1	대	397	적 량	고 결	85 7- 1	대	318 .5		78. 5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08	적 량	고 결	86 3- 3	전	337	적 량	고 결	86 3- 3	전	315 .6		21. 4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09	적 량	고 결	86 3- 5	전	1,3 49	적 량	고 결	86 3- 5	전	1,3 82. 2	33. 2		반*래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 석호 해 와 루 아 파 트 ****-****			
110	적 량	고 결	86 8- 29	도 로	43	적 량	고 결	86 8- 29	도 로			43. 0	배*환	****-**			
111	적 량	고 결	94 5- 2	하 천	23	적 량	고 결	94 5- 2	하 천	23. 0			송**상	***			
112	적 량	고 결	88 0- 5	도 로	35	적 량	고 결	88 0- 5	도 로			35. 0	송*생	***			
113	적 량	고 결	86 1- 1	대	130	적 량	고 결	86 8- 20	대	449 .2		58. 8	송*호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14	적 량	고 결	86 2- 1	대	63												

115	적 량	고 절	86 2- 2	대	179												
116	적 량	고 절	86 8- 20	대	136												
117	적 량	고 절	90 9	전	416	적 량	고 절	90 9	전	232 .0		74. 0	신*철	서울특별시 송파 구 성내천로*길 *-* *동 * * * * 호			
						적 량	고 절	90 9- 2	전	83. 4		26. 6	신*철	서울특별시 송파 구 성내천로*길 *-* *동 * * * * 호			
118	적 량	고 절	90 9- 1	전	189	적 량	고 절	90 9- 1	전	174 .5		14. 5	신*철	서울특별시 송파 구 성내천로*길 *-* *동 * * * * 호			
119	적 량	고 절	94 6- 17	대	88	적 량	고 절	94 6- 17	대	88. 0			신*자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 * * *			
120	적 량	고 절	94 7- 4	대	62	적 량	고 절	94 7- 4	대	113 .6	35. 6		신*자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 * * *			
121	적 량	고 절	12 79 -5	대	16												
122	적 량	고 절	86 2- 3	대	383	적 량	고 절	86 2- 3	대	475 .6		92. 6	신*호	* * * * *			
123	적 량	고 절	82 7- 3	답	204	적 량	고 절	82 7- 3	답	280 .0		76. 0	안* * * 회	* * * * *			
124	적 량	고 절	84 2	대	377	적 량	고 절	84 2	대	301 .0		76. 0	안* * * 회	* * * * *			
125	적 량	고 절	86 8- 14	전	448	적 량	고 절	86 8- 14	전	436 .8		11. 2	여*모, 김*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읍 삼계**길 ** * * * * 동 * * * * 호			
126	적 량	고 절	93 1- 1	답	2,0 80	적 량	고 절	93 1- 1	답	1,9 69. 8		110 .2	오*정	울산광역시 울주 군 서생면 해맞이 로 * * * * *			
127	적 량	고 절	94 6- 3	답	767	적 량	고 절	94 6- 3	답	726 .5		40. 5	오*정	울산광역시 울주 군 서생면 해맞이 로 * * * * *			
128	적 량	고 절	84	대		적 량	고 절	84	대		48.		유*희	경상남도 하동군			

8	량	절	4		255	량	절	4		303	0			적량면 안성길 ***-
129	적량	고절	865-1	전	205	적량	고절	865-1	전	444		34.2	이예순	경상남도하동군하 동읍산복*길** ***동 ****호
130	적량	고절	865-2	전	274									
131	적량	고절	880	전	101	적량	고절	880	전	120	19.6		이예순	경상남도하동군하 동읍산복*길** ***동 ****호
132	적량	고절	901	전	1,084	적량	고절	901	전	1,084			이정옥, 이춘근, 이정남, 이호근, 이정임, 정순례, 강인석	서리 ***
133	적량	고절	962	전	96	적량	고절	962	전	96			이정옥, 이춘근, 이정남, 이호근, 이정임, 정순례, 이평근	서리 ***
134	적량	고절	942	창고용지	478	적량	고절	942	창고용지	572	94.9		이*규	***-
135	적량	고절	955	대	311	적량	고절	955	대	492	181.1		이*규	***-
136	적량	고절	946-6	대	660	적량	고절	946-6	대	495		164.1	이*욱	부산 해운대구 좌동 **** 해운대 * 차 롯데아파트 ***동 ****호
137	적량	고절	946-20	답	226	적량	고절	946-20	답	499	273.5		이*욱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좌동순환로 ***번길 * ***동 ****호
138	적량	고절	868-24	도로	34	적량	고절	868-24	도로			34.0	이*수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
13	적	고	84	대		적	고	84	대			66.	이*중	경상남도 하동군

9	량	절	9		608											적량면	안성길
14	적	고	85	대		량	절	9		696		2				***	
0	량	절	0		155					.8							
14	적	고	91	답		적	고	91	답	175	6.5			이*채		서울특별시	금천
1	량	절	2		169	량	절	2		.5						구	시흥동
																***	***호
14	적	고	94	답		적	고	94	답	191	52.			이*채		서울특별시	금천
2	량	절	8		139	량	절	8		.6	6					구	시흥동
																***	***호
14	적	고	93	대		적	고	93	대	346	14.			임*신		경상남도	하동군
3	량	절	1-9		332	량	절	1-9		.1	1					하동읍	남당길
																***	***호
14	적	고	94	답		적	고	94	답			53.		전*중		하동군	적량면
4	량	절	6-14		53	량	절	6-14				0				고절리	***
14	적	고	95	전		적	고	95	전	471	68.			전*수		경상남도	하동군
5	량	절	3		539	량	절	3		.0	0					적량면	고절리

14	적	고	95	대		적	고	95	대	1,0	238			전*수		경상남도	하동군
6	량	절	4		990	량	절	4		09.	.6					적량면	고절리
										6						***	
147	적	고	95	전		적	고	95	전	595	363			전*수		경상남도	하동군
	량	절	4-1		959	량	절	4-1		.7	.3					적량면	고절리

148	적	고	95	전		적	고	95	전	80.	53.			전*수		경상남도	하동군
	량	절	4-2		134	량	절	4-2		4	6					적량면	고절리

149	적	고	96	답		적	고	96	답	815	38.			전*수		경상남도	하동군
	량	절	1		777	량	절	1		.8	8					적량면	고절리

150	적	고	96	전		적	고	96	전	549				전*수		경상남도	하동군
	량	절	4		549	량	절	4		.0						적량면	고절리

151	적	고	94	대		적	고	94	대	289	48.			전*숨		부산광역시	해운
	량	절	6-4		241	량	절	6-4		.0	0					대구	반송로***번
																길	****(반송동)

152	적	고	88	도로		적	고	88	도로		147			정*남		전라남도	광양시
	량	절	1-3		147	량	절	1-3			.0					다압면	도사리

153	적	고	88	전		적	고	88	전		40.			정*남		전라남도	광양시
	량	절	1-		40	량	절	1-			0					다압면	도사리

			4					4						****	
154	적 량	고 절	94 5	하 천	132	적 량	고 절	94 5	하 천			132 .0	정*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	
155	적 량	고 절	95 6	대	202	적 량	고 절	95 6	대	319 .1	117 .1		정*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	
156	적 량	고 절	91 8	전	866	적 량	고 절	91 8	전	866 .0			정*근	***	
157	적 량	고 절	91 8- 1	대	172	적 량	고 절	91 8- 1	대	172 .0			정*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길 ***-*	
158	적 량	고 절	91 9	전	221	적 량	고 절	91 9	전	213 .8		7.2	정*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길 ***-*	
159	적 량	고 절	92 5- 4	대	671	적 량	고 절	92 6	대	926 .0		152 .0	정*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우성 아파트 **동 **** 호	
160	적 량	고 절	92 6	대	129										
161	적 량	고 절	92 7	대	106										
162	적 량	고 절	92 8	대	172										
163	적 량	고 절	93 4- 1	답	27	적 량	고 절	93 4- 1	답			27. 0	정*, 정 *채, 정 *경	서울성동구중곡 동****-**	
164	적 량	고 절	93 4- 3	답	7	적 량	고 절	93 4- 3	답			7.0	정*, 정 *채, 정 *경	서울 성동구 중 곡동 ***-**	
165	적 량	고 절	95 1	전	159	적 량	고 절	95 1	전	159 .0			정*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우 성아파트 **동 ****호	
166	적 량	고 절	95 2	전	169	적 량	고 절	95 2	전	169 .0			정*	서울 송파구 잠 실동 ***-* 우성 아파트 **동 **** 호	
167	적 량	고 절	96 0	전	374	적 량	고 절	96 0	전	374 .0			정*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우 성아파트 **동 ****호	
168	적 량	고 절	86 0	대	264	적 량	고 절	86 0	대	337 .1	73. 1		정*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169	적 량	고 결	86 4	전	89	적 량	고 결	86 4	전	89. 0			정*석	고절리
170	적 량	고 결	84 7	대	565	적 량	고 결	84 7	대	483 .0		82. 0	정*훈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71	적 량	고 결	84 8	대	593	적 량	고 결	84 8	대	799 .7	206 .7		정*운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 **호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관사)
172	적 량	고 결	84 8- 1	대	111	적 량	고 결	84 8- 1	대			111 .0	정*운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 **호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관사)
173	적 량	고 결	92 9	대	165	적 량	고 결	92 9	대	276 .3	55. 3		정*운	***
174	적 량	고 결	93 0	대	56									
175	적 량	고 결	94 3	대	660	적 량	고 결	94 3	대	547 .5		112 .5	정*운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176	적 량	고 결	94 3- 4	대	203	적 량	고 결	94 3- 4	대	318 .8	115 .8		정*운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
177	적 량	고 결	84 5	대	145	적 량	고 결	84 6	대	485 .0			정*영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78	적 량	고 결	84 6	대	340									
179	적 량	고 결	94 6- 2	답	1,6 43	적 량	고 결	94 6- 2	답	1,5 88. 4		54. 6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0	적 량	고 결	94 6- 5	전	24	적 량	고 결	94 6- 5	전			24. 0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1	적 량	고 결	94 6- 9	답	56	적 량	고 결	94 6- 9	답			56. 0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182	적 량	고 결	94 6- 16	답	36	적 량	고 결	94 6- 16	답			36. 0	정*정	이치아파트*단지)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3	적 량	고 결	94 7	대	328	적 량	고 결	94 7	대	417 .7	89. 7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4	적 량	고 결	94 9	대	165	적 량	고 결	94 9	대	261 .0	96. 0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5	적 량	고 결	10 75 -2	답	150	적 량	고 결	10 75 -2	답	150 .0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6	적 량	고 결	산 15 5- 1	임 야	426	적 량	고 결	13 11	임 야	328 .8	97. 2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 동 ****호(충무공 동 혁신도시엘에 이치아파트*단지)
187	적 량	고 결	92 3- 1	임 야	281	적 량	고 결	92 3- 1	임 야	185 .4	95. 6		정*수	하동읍 읍내동 ****-
188	적 량	고 결	92 3- 4	대	694	적 량	고 결	92 3- 4	대	827 .2	133 .2		조*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89	적 량	고 결	86 3- 1	전	218	적 량	고 결	86 3- 1	전	212 .4	5.6		주*돈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90	적 량	고 결	86 8- 2	답	79	적 량	고 결	86 8- 2	답		79. 0		주*돈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91	적 량	고 결	86 8- 16	전	159	적 량	고 결	86 8- 16	전	217 .5	58. 5		주*돈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
192	적 량	고 결	86 8- 17	대	364	적 량	고 결	86 8- 17	대	649 .2	285 .2		주*돈	부산광역시 사상 구 학감대로 ****-***동

														***호 (학장동 학장벽산아파트)
193	적량	고절	841	임야	426	적량	고절	841	임야	359.1		66.9	진 ***** ***중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
194	적량	고절	837	임야	1,058	적량	고절	837	임야	969.2		88.8	최*옥	***
195	적량	고절	838	대	298	적량	고절	839	대	843.6	26.6		최*옥	***
196	적량	고절	839	대	519									
197	적량	고절	812	임야	6,592	적량	고절	812	임야	6,349.2		242.8	하*군	
198	적량	고절	812-1	도로	169	적량	고절	812-1	도로	192.3		73.8	하*군	
						적량	고절	812-3	도로	82.0		31.5	하*군	
199	적량	고절	812-2	임야	23	적량	고절	812-2	임야			23.0	하*군	
200	적량	고절	822-2	도로	142	적량	고절	822-2	도로	126.0		16.0	하*군	
201	적량	고절	823-1	도로	361	적량	고절	823-1	도로	430.9		69.9	하*군	
202	적량	고절	825-2	도로	50	적량	고절	825-2	도로	75.9		55.5	하*군	
						적량	고절	825-9	도로	110.0		80.4	하*군	
203	적량	고절	826-1	도로	449	적량	고절	826-1	도로	397.5		51.5	하*군	
204	적량	고절	827-2	도로	7	적량	고절	827-2	도로			7.0	하*군	
205	적량	고절	828-	도로	493	적량	고절	828-	도로	465		49.9	하*군	

			1					1	.2							
						적	고	82	도							
						량	절	8-	로	87.	9.3		하*군			
								2		0						
206	적	고	83	임	1,0	적	고	83	임	1,0		14.	하*군			
	량	절	1	야	98	량	절	1	야	83.		6				
										4						
207	적	고	83	임		적	고	83	임	582			하*군			
	량	절	1-	야	582	량	절	1-	야	.0						
			2					2								
208	적	고	93	도	1,2	적	고	93	도	1,4	778		하*군			
								1-	로	70.	.8					
								3		3						
								적	고	93	도				102	54.
								량	절	1-	로				.7	4
3		11														
						적	고	93	도	81.	43.		하*군			
						량	절	1-	로	9	4					
								1-								
						적	고	93	도	1,0	533					
						량	절	1-	로	06.	.2					
								13		6						
						적	고	93	도	85.	45.		하*군			
						량	절	1-	로	5	3					
								1-								
						적	고	93	도							
						량	절	1-	로							
								8								
209	적	고	93	도	20	적	고	93	도			20.	하*군			
	량	절	1-	로		량	절	1-	로			0				
			8					8								
210	적	고	97	전	443	적	고	97	전	443			하*우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		
	량	절	4-			량	절	4-		.0						
			1					1								
211	적	고	95	전	202	적	고	95	전	401	199		하*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		
	량	절	8-			량	절	8-		.6	.6					
			2					2								
212	적	고	96	답	493	적	고	96	답	493			하*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		
	량	절	5-			량	절	5-		.0						
			1					1								
213	적	고	96	답	457	적	고	96	답	494	37.		하*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		
	량	절	5-			량	절	5-		.6	6					
			3					3								
214	적	고	96	대	660	적	고	96	대	803	143		하*시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량	절	5-			량	절	5-		.8						

			2				2		.8				**~**	
215	적 량	고 결	97 4- 2	전	291	적 량	고 결	97 4- 2	전	291 .0			하*시	*~***
216	적 량	고 결	92 1- 3	대	294	적 량	고 결	92 1- 3	대	340 .8	46. 8		하*숙	*~***
217	적 량	고 결	93 4- 2	구 거	44	적 량	고 결	93 4- 2	구 거		44. 0		한*****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하동군 공고 제2019 - 1330호

신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촌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9.

하 동 군 수

- 1. 공고기간 : 2019. 12. 19. ~ 2020. 1. 3.(15일간)
- 2. 사 업 명 :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3. 사업위치 :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456-18번지 일원
-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 5. 관계서류 공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나. 공람기간 : 2019. 12. 19. ~ 2020. 1. 3.(15일간)
 - 다. 공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6. 문 의 처 :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부서(☎055-880-2083)

붙 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신촌지구 지적확정조서

번호	중전 토지					산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주소	
1	진교	고이	450	전	727	진교	고이	450	전	695.9		31.1	강*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포동2가 ***-* 경남신포맨션 ****	
2	진교	고이	456-38	대	343	진교	고이	456-38	대	354.3	11.3		강*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3	진교	고이	488-1	전	142	진교	고이	488-1	전	157.3	15.3		강*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4	진교	고이	495	전	231	진교	고이	495	전	255.7	24.7		강*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5	진교	고이	산123-7	임야	677	진교	고이	450-5	임야	765.9	88.9		강*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6	진교	고이	457-1	학교용지	10,418	진교	고이	457-1	학교용지	10,407.0	11.0		경**도(**감)		
7	진교	고이	456-23	전	1,204	진교	고이	456-23	전	1,031.7	9.9		고*룡	***	
						진교	고이	456-65	전	184.0	1.8		고*룡	***	
8	진교	고이	456-44	전	18	진교	고이	456-44	전	0.0	18.0		고*룡	***	
9	진교	고이	486	대	288	진교	고이	486	대	305.8	17.8		고*룡	***	
10	진교	고이	산12-3	임야	1,007	진교	고이	454-5	임야	219.8	84.0		고*룡	***	
						진교	고이	454-6	임야	646.9	247.4		고*룡	***	
						진교	고이	454-7	임야	247.9	94.8		고*룡	***	

						진 교	고 이	45 4- 8	임 야	515. 8	197. 2		고*용	***	
11	진 교	고 이	49 1- 1	도 로	133	진 교	고 이	49 1- 1	도 로	127. 5		5.5	국(국 ***부)		
12	진 교	고 이	49 2	답	1,2 06	진 교	고 이	49 2	답	929. 7		276. 3	국(국 ***부)		
13	진 교	고 이	49 2- 8	도 로	168	진 교	고 이	49 2- 8	도 로	181. 0	158. 5		국(국 ***부)		
						진 교	고 이	49 2- 12	도 로	1,17 2.3	1,02 6.8		국(국 ***부)		
14	진 교	고 이	49 2- 9	답	7	진 교	고 이	49 2- 9	답	0.0		7.0	국(국 ***부)		
15	진 교	고 이	12 43	도 로	1,4 31	진 교	고 이	12 43	도 로	854. 5		576. 5	국(국 ***부)		
16	진 교	고 이	12 44	도 로	971	진 교	고 이	12 44	도 로	3,14 2.2	2,17 1.2		국(국 ***부)		
17	진 교	고 이	12 45	도 로	146	진 교	고 이	12 45	도 로	66.5		79.5	국(국 ***부)		
18	진 교	고 이	산 88 -9	도 로	65	진 교	고 이	49 2- 10	도 로	84.2	19.2		국(국 ***부)		
19	진 교	고 이	산 88 -1 0	도 로	138	진 교	고 이	49 2- 11	도 로	138. 0			국(국 ***부)		
20	진 교	고 이	산 30 9	도 로	1,0 34	진 교	고 이	50 0- 27	도 로	471. 4		562. 6	국(국 ***부)		
21	진 교	고 이	산 30 9- 2	도 로	307	진 교	고 이	산 30 9- 2	도 로	0.0		307. 0	국(국 ***부)		
22	진 교	고 이	48 3- 2	전	114	진 교	고 이	48 3- 2	전	0.0		114. 0	국(기 ***부)		
23	진 교	고 이	48 3- 3	전	394	진 교	고 이	48 3- 3	전	0.0		394. 0	국(기 ***부)		
24	진 교	고 이	48 3- 전		16	진 교	고 이	48 3- 전		0.0		16.0	국(기 ***부)		

25	진 교	고 이	5 48 3- 6	전	80	진 교	고 이	5 48 3- 6	전	0.0		80.0	국(기 ***부)		
26	진 교	고 이	48 3- 7	도 로	211	진 교	고 이	48 3- 7	도 로	1,17 2.5	601. 5		국(기 ***부)		
27	진 교	고 이	50 0- 13	도 로	360										
28	진 교	고 이	48 3- 8	전	14	진 교	고 이	48 3- 8	전	0.0		14.0	국(기 ***부)		
29	진 교	고 이	48 3- 9	전	55	진 교	고 이	48 3- 9	전	0.0		55.0	국(기 ***부)		
30	진 교	고 이	48 3- 10	전	544	진 교	고 이	48 3- 10	전	574. 4	118. 8		국(기 ***부)		
						진 교	고 이	48 3- 20	전	111. 5	23.1		국(기 ***부)		
31	진 교	고 이	48 3- 11	전	21	진 교	고 이	48 3- 11	전	0.0		21.0	국(기 ***부)		
32	진 교	고 이	48 3- 12	전	44	진 교	고 이	48 3- 12	전	0.0		44.0	국(기 ***부)		
33	진 교	고 이	48 3- 14	전	167	진 교	고 이	48 3- 14	전	255. 5	88.5		국(기 ***부)		
34	진 교	고 이	48 3- 13	전	56	진 교	고 이	48 3- 13	전	0.0		56.0	국(기 ***부)		
35	진 교	고 이	48 3- 19	전	43	진 교	고 이	48 3- 19	전	0.0		43.0	국(기 ***부)		
36	진 교	고 이	50 0- 3	전	278	진 교	고 이	50 0- 3	전	0.0		278. 0	국(기 ***부)		
37	진 교	고 이	50 0- 11	전	51	진 교	고 이	50 0- 11	전	0.0		51.0	국(기 ***부)		
38	진 교	고 이	50 0- 12	전	68	진 교	고 이	50 0- 12	전	0.0		68.0	국(기 ***부)		
39	진 교	고 이	산 10 7-	임 야	70	진 교	고 이	산 10 7-	임 야	0.0		70.0	국(기 ***부)		

			1				1										
40	진 교	고 이	산 10 7- 9	임 야	1,6 07	진 교	고 이	48 3- 22	임 야	1,44 9.4		157. 6	국(기 ***부)				
41	진 교	고 이	산 10 7- 10	도 로	680	진 교	고 이	산 10 7- 10	도 로	0.0		680. 0	국(기 ***부)				
42	진 교	고 이	산 10 7- 11	도 로	93	진 교	고 이	산 10 7- 11	도 로	0.0		93.0	국(기 ***부)				
43	진 교	고 이	산 10 7- 12	도 로	228	진 교	고 이	산 10 7- 12	도 로	0.0		228. 0	국(기 ***부)				
44	진 교	고 이	12 46	도 로	2,3 26	진 교	고 이	12 46	도 로	2,66 2.1	670. 0		국(농 ***부)				
						진 교	고 이	12 46 -1	도 로	446. 2	112. 3		국(농 ***부)				
45	진 교	고 이	산 11 3	임 야	893	진 교	고 이	48 0- 2	임 야	180. 4		129. 3	국(** 칭)				
						진 교	고 이	48 0- 3	임 야	229. 7		164. 7	국(** 칭)				
						진 교	고 이	48 0- 4	임 야	110. 0		78.9	국(** 칭)				
46	진 교	고 이	47 9- 2	도 로	23	진 교	고 이	47 9- 2	도 로	0.0		23.0	김*생	***			
47	진 교	고 이	45 5- 8	대	400	진 교	고 이	45 5- 8	대	881. 6	481. 6		김*택	진주시 하대동 **~** 하대한보아파트 *** 동 ***호			
48	진 교	고 이	산 12 2- 6	임 야	3,0 75	진 교	고 이	45 5- 15	임 야	2,41 8.8		168. 3	김*택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 동 **~** 하대한보 아파트 ***동 ***호			
						진 교	고 이	45 5- 16	임 야	456. 2		31.7	김*택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 동 **~** 하대한보 아파트 ***동 ***호			
49	진 교	고 이	45 5- 1	대	142	진 교	고 이	45 5- 1	대	71.0			김*택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 동 **~** 하대한보 아파트 ***동 ***호			
													박*주	***			

						진 교	고 이	45 5- 9	대	71.0			김*택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 동 **-* 하대한보 아파트 ***동 ***호
													박*주	***
50	진 교	고 이	48 3	대	195	진 교	고 이	48 3	대	496. 6	301. 6		김*순	***
51	진 교	고 이	45 6- 37	대	636	진 교	고 이	45 6- 37	대	752. 3	116. 3		김*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52	진 교	고 이	50 0- 4	전	112	진 교	고 이	50 0- 4	전	0.0	112. 0		김*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53	진 교	고 이	45 5- 4	대	635	진 교	고 이	45 5- 4	대	767. 0	132. 0		김*숙	김해시 외동 ****-*
													이*은	김해시 외동 ****-*
													이*정	김해시 외동 ****-*
													이*혁	김해시 외동 ****-*
54	진 교	고 이	45 6- 4	전	574	진 교	고 이	45 6- 4	전	724. 4	150. 4		김*숙	김해시 외동 ****-*
													이*은	김해시 외동 ****-*
													이*정	김해시 외동 ****-*
													이*혁	김해시 외동 ****-*
55	진 교	고 이	45 6- 31	도 로	81	진 교	고 이	45 6- 31	도 로	0.0	81.0		김*숙	김해시 외동 ****-*
													이*은	김해시 외동 ****-*
													이*정	김해시 외동 ****-*
													이*혁	김해시 외동 ****-*
56	진 교	고 이	45 6- 32	도 로	21	진 교	고 이	45 6- 32	도 로	0.0	21.0		김*숙	김해시 외동 ****-*
													이*은	김해시 외동 ****-*
													이*정	김해시 외동 ****-*
													이*혁	김해시 외동 ****-*
57	진 교	고 이	45 6- 62	전	22	진 교	고 이	45 6- 62	전	0.0	22.0		김*숙	김해시 외동 ****-*
													이*은	김해시 외동 ****-*

															이*정	김해시 외동 ****-**
															이*혁	김해시 외동 ****-**
58	진 교	고 이	산 12 2- 4	임 야	472	진 교	고 이	45 4- 9	임 야	677. 2	205. 2				김*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 면 대곡길 **, ***동 ***호 (통영청구하이 츠)
59	진 교	고 이	49 0	대	294	진 교	고 이	49 0	대	330. 6	36.6				김*열	김해시 외동 ****-** 경원마을한국아파트 ***동 ***호
60	진 교	고 이	47 6- 5	도 로	13	진 교	고 이	47 6- 5	도 로	0.0		13.0			김*일	***
61	진 교	고 이	47 6- 6	도 로	13	진 교	고 이	47 6- 6	도 로	0.0		13.0			김*일	***
62	진 교	고 이	47 5	대	403	진 교	고 이	47 5- 2	대	364. 6		38.4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
63	진 교	고 이	47 8	대	136	진 교	고 이	47 8	대	727. 8	3.8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
64	진 교	고 이	47 8- 2	대	436											
65	진 교	고 이	47 9- 1	대	152											
66	진 교	고 이	48 0	전	128	진 교	고 이	48 0	전	101. 2		26.8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
67	진 교	고 이	48 4- 2	도 로	36	진 교	고 이	48 4- 2	도 로	36.0					김**월	***
68	진 교	고 이	45 6- 42	대	369	진 교	고 이	45 6- 42	대	365. 3		3.7			김*분	***
69	진 교	고 이	46 7	대	413	진 교	고 이	46 7	대	433. 5	20.5				김*분	***
70	진 교	고 이	48 9	대	274	진 교	고 이	48 9	대	369. 7	95.7				김*분	***
71	진 교	고 이	산 10 8- 2	임 야	200	진 교	고 이	49 9- 4	임 야	200. 0					김*식	고전면 명교리 **
72	진 교	고 이	50 0	대	713	진 교	고 이	50 0	대	611. 9		101. 1			김*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 읍 죽계1길 ****-**
73	진 교	고 이	51 5	전	347	진 교	고 이	51 5	전	667. 2	320. 2				김*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동 ***-** 동경아트 빌라 -***

74	진 교	고 이	45 6- 22	대	340	진 교	고 이	45 6- 22	대	343. 4	3.4	김*민	부산광역시 북구 팽나 무로42번길 **, *동 ***호 (구포동, 신우 빌라)
75	진 교	고 이	45 6- 10	도 로	36	진 교	고 이	45 6- 10	도 로	0.0	36.0	김*석	***-*
76	진 교	고 이	45 6- 11	전	33	진 교	고 이	45 6- 11	전	0.0	33.0	김*석	***-*
77	진 교	고 이	45 6- 17	전	1,0 23	진 교	고 이	45 6- 17	전	963. 4	155. 1	김*규	***
						진 교	고 이	45 6- 64	전	255. 9	41.2	김*규	***
78	진 교	고 이	45 6- 34	도 로	81	진 교	고 이	45 6- 34	도 로	0.0	81.0	김*규	***
79	진 교	고 이	47 5- 1	대	489	진 교	고 이	47 5- 1	대	475. 2	33.8	김*규	***
80	진 교	고 이	47 6- 4	대	20								
81	진 교	고 이	47 6- 1	전	301	진 교	고 이	47 6- 1	전	303. 3	2.3	김*규	***
82	진 교	고 이	산 91	임 야	298	진 교	고 이	47 5- 4	임 야	287. 1	10.9	김*규	***
83	진 교	고 이	45 6- 6	잡 종 지	499	진 교	고 이	45 6- 6	잡 종 지	692. 0	193. 0	김*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 면 대곡길 **,***동 ***호 (통영청구하이 츠)
84	진 교	고 이	산 11 6- 11	임 야	1,5 16	진 교	고 이	45 7- 13	임 야	978. 6	141. 6	김*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 면 대곡길 **,***동 ***호 (통영청구하이 츠)
						진 교	고 이	45 7- 14	임 야	345. 8	50.0	김*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 면 대곡길 **,***동 ***호 (통영청구하이 츠)
85	진 교	고 이	45 6- 20	전	650	진 교	고 이	45 6- 20	전	437. 3	212. 7	김*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 포대교로 ***, ***호 (송포동,삼보송림아파 트)
86	진	교	45			진	교	45		932.		김*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

	교 이	6-57	전	798	교 이	6-57	전	3	134.3			포대교로 ***, ***호 (송포동,삼보송림아파트)	
87	진 교	고 이	산 88-22	임 야	4,823	진 교	고 이	438-9	임 야	4,316.5	506.5	김*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호 (송포동,삼보송림아파트)
88	진 교	고 이	473-2	도 로	10	진 교	고 이	473-2	도 로	10.0		김**룡	***
89	진 교	고 이	산 106-6	임 야	198	진 교	고 이	산 106-6	임 야	0.0	198.0	김*석	***
90	진 교	고 이	산 123-4	임 야	1,167	진 교	고 이	442-2	임 야	1,164.5	2.5	김*오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
												이*순	***
												정*갑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 미진스위트빌아파트 ***동 ***호
												신*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도개공아파트 ***-***
91	진 교	고 이	472	대	446	진 교	고 이	472	대	432.2	13.8	김 해 ***** 신촌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신촌길 **~**
92	진 교	고 이	478-4	대	443	진 교	고 이	478-4	대	428.2	14.8	풍천 ***** 하동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93	진 교	고 이	산 114-1	임 야	10,612	진 교	고 이	478-5	임 야	7,285.1	944.7	풍천 ***** 하동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진 교	고 이	478-6	임 야	1,233.4	159.9	풍천 ***** 하동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진 교	고 이	478-7	임 야	174.3	22.6	풍천 ***** 하동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진 교	고 이	478-8	임 야	701.1	90.9	풍천 ***** 하동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중		
94	진 교	고 이	48 5- 1	대	725	진 교	고 이	48 5- 1	대	688. 3		36.7	노*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95	진 교	고 이	48 5- 5	대	123	진 교	고 이	48 5- 5	대	227. 4	104. 4		노*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진교리 ***~*** 우인레드빌 ***호	
96	진 교	고 이	48 7- 1	전	231	진 교	고 이	48 7- 1	전	166. 7		64.3	노*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진교리 ***~*** 우인레드빌 ***호	
97	진 교	고 이	48 7- 2	도 로	46	진 교	고 이	48 7- 2	도 로	0.0		46.0	노*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진교리 ***~*** 우인레드빌 ***호	
98	진 교	고 이	49 6- 1	대	93	진 교	고 이	49 6- 1	대	79.9		13.1	류*임	***	
99	진 교	고 이	47 5- 3	도 로	3	진 교	고 이	47 5- 3	도 로	3.0			류*화	***	
10 0	진 교	고 이	산 10 3	임 야	7, 2 33	진 교	고 이	50 1- 1	임 야	7,05 8.9		174. 1	밀 양 ***** 진교신 촌중중	***	
10 1	진 교	고 이	46 8	대	317	진 교	고 이	46 8	대	256. 8		60.2	동*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10 2	진 교	고 이	48 3- 1	대	715	진 교	고 이	48 3- 1	대	1,31 4.3	599. 3		박*수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 사로1002번길 **, ***동 ****호 (생연 동,에이스아파트)	
													박*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10 3	진 교	고 이	48 3- 4	전	363	진 교	고 이	48 3- 4	전	363. 0			동*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10 4	진 교	고 이	49 7- 1	대	418	진 교	고 이	49 7- 1	대	418. 0			박*표		
10 5	진 교	고 이	49 7- 4	대	7	진 교	고 이	49 7- 4	대	7.0			박*표		
10 6	진 교	고 이	산 11 0	임 야	325	진 교	고 이	49 8- 1	임 야	325. 0			박*선		
10 7	진 교	고 이	산 88 -1 4	도 로	55	진 교	고 이	산 88 -1 4	도 로	0.0		55.0	박*구	***~*	
													박*수	***	

														박*구	***	
														박*호	***	
108	진교	고이	500-19	전	197	진교	고이	500-19	전	335.5	138.5			박*은	고룡리 * 미진스위트 빌아파트 ***동 ***호	
109	진교	고이	438-2	전	568	진교	고이	438-2	전	1,324.1	756.1			박*선	***	
110	진교	고이	456-21	전	90	진교	고이	456-21	전	0.0		90.0		박*선	***	
111	진교	고이	456-43	대	380	진교	고이	456-43	대	451.6	71.6			박*선	***	
112	진교	고이	457-9	전	210	진교	고이	457-9	전	0.0		210.0		박*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113	진교	고이	494-1	대	820	진교	고이	494-1	대	580.1	30.6			박*선	***	
						진교	고이	494-4	대	285.6	15.1			박*선	***	
114	진교	고이	498	대	185	진교	고이	498	대	212.9	27.9			박*선	***	
115	진교	고이	514	전	132	진교	고이	514	전	132.0				박*선	***	
116	진교	고이	산 116-7	임야	975	진교	고이	457-12	임야	458.6		516.4		박*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신촌길 *-*	
117	진교	고이	산 12-1	임야	603	진교	고이	455-13	임야	485.3		117.7		박*선	***	
118	진교	고이	493-1	대	152	진교	고이	493-1	대	152.0				박*수	진주시 인사동 ***-***	
119	진교	고이	산 88-5	임야	2,079	진교	고이	474-7	임야	577.5		378.0		박*수, 박*구, 박*호	***	
						진교	고이	474-8	임야	411.5		269.3		박*수, 박*구, 박*호	***	
						진교	고이	47	임	267.				박*	***	

						교 이	4-9	야 6		175.1	수, 박*구, 박*호			
120	진 교	고 이	산 88-6	임 야	166	진 교	고 이	438-10	임 야	169.7	3.7	박*수, 박*구, 박*호	***	
121	진 교	고 이	산 88-20	임 야	15,043	진 교	고 이	438-12	임 야	9,069.8		688.6	박*호	***
						진 교	고 이	438-13	임 야	3,849.6		292.2	박*호	***
						진 교	고 이	438-14	임 야	402.3		30.5	박*호	***
						진 교	고 이	438-15	임 야	659.9		50.1	박*호	***
122	진 교	고 이	439-2	도 로	288	진 교	고 이	439-2	도 로	0.0		288.0	박*생	***
123	진 교	고 이	439-3	도 로	213	진 교	고 이	439-3	도 로	0.0		213.0	박*생	***
124	진 교	고 이	440-1	도 로	387	진 교	고 이	440-1	도 로	0.0		387.0	박*생	***
125	진 교	고 이	440-2	도 로	89	진 교	고 이	440-2	도 로	0.0		89.0	박*생	***
126	진 교	고 이	516	전	1,970	진 교	고 이	516	전	1,831.8		40.7	박*웅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
						진 교	고 이	516-7	전	95.4		2.1	박*웅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
127	진 교	고 이	455-6	도 로	39	진 교	고 이	455-6	도 로	0.0		39.0	김*숙	김해시 외동 ****-**
													이*은	김해시 외동 ****-**
													이*정	김해시 외동 ****-**
													이*혁	김해시 외동 ****-**
128	진 교	고 이	517	전	433	진 교	고 이	517	전	517.1	84.1		박*남	진주시 중안동 ***-*
12	진 교	고	51			진 교	고	51		196.			박*병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

9	교	이	2	전	196	교	이	2	전	0				거로 **, ***동 ***호 (평거동, 엠코타운 더프라하)
130	진	교	이	518	전	329	진	교	이	518	전	329.0		박*병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평거동, 엠코타운 더프라하)
131	진	교	이	산 88-17	임 야	4,7 27	진	교	이	438-7	임 야	4,69 3.7	33.3	박*병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평거동, 엠코타운 더프라하)
132	진	교	이	산 92	임 야	694	진	교	이	469-1	임 야	694.0		서*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신촌길 ***-***
133	진	교	이	438-3	전	796	진	교	이	438-3	전	946.6	150.6	서*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
134	진	교	이	452-1	전	488	진	교	이	452-1	전	645.3	157.3	서*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
135	진	교	이	455-2	대	311	진	교	이	455-2	대	374.5	63.5	서*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
136	진	교	이	469	대	724	진	교	이	469	대	754.2	30.2	서*행 ***
137	진	교	이	488-2	도 로	40	진	교	이	488-2	도 로	0.0	40.0	서*행 ***
138	진	교	이	492-2	도 로	17	진	교	이	492-2	도 로	0.0	17.0	서*행 ***
139	진	교	이	492-3	도 로	23	진	교	이	492-3	도 로	0.0	23.0	서*행 ***
140	진	교	이	470	대	165	진	교	이	470	대	386.6	19.6	서*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 ***호 (대림주택)
141	진	교	이	471-1	대	202								
142	진	교	이	471-2	도 로	10	진	교	이	471-2	도 로	10.0		서*행 ***
143	진	교	이	455-3	대	545	진	교	이	455-3	대	562.1	17.1	손*곤 광양시 금호동 *** 목련빌라 **동 ***호
144	진	교	이	산 123-9	임 야	865	진	교	이	450-7	임 야	712.5	152.5	송*주 ***-*

													이*경	북천면 옥정리 ***
14 5	진 교	고 이	산 12 3- 10	임 야	553	진 교	고 이	45 0- 6	임 야	660. 2	107. 2		송*진	진주시 망경동 ***
14 6	진 교	고 이	45 6- 5	도 로	50	진 교	고 이	45 6- 5	도 로	50.0			송*근 외 29 인	***
14 7	진 교	고 이	45 6- 8	전	26	진 교	고 이	45 6- 8	전	26.0			송*근 외 29 인	***
14 8	진 교	고 이	45 6- 9	도 로	334	진 교	고 이	45 6- 9	도 로	334. 0			송*근 외 29 인	***
14 9	진 교	고 이	45 6- 29	도 로	261	진 교	고 이	45 6- 29	도 로	261. 0			송*근 외 29 인	***
15 0	진 교	고 이	43 9- 1	전	339	진 교	고 이	43 9- 1	전	1,08 8.7	749. 7		신*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15 1	진 교	고 이	산 11 6- 8	임 야	216	진 교	고 이	산 11 6- 8	임 야	0.0	216. 0		신*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15 2	진 교	고 이	산 11 6- 9	임 야	31	진 교	고 이	산 11 6- 9	임 야	0.0	31.0		신*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15 3	진 교	고 이	45 6- 28	대	242	진 교	고 이	45 6- 28	대	352. 5	110. 5		신*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15 4	진 교	고 이	산 12 3- 8	임 야	717	진 교	고 이	45 0- 4	임 야	718. 0	1.0		김*열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 렬대로140번길 **, ***동 ****호(온천동, 동래대우아파트)
15 5	진 교	고 이	48 2- 1	대	377	진 교	고 이	48 2- 1	대	400. 1	23.1		신*욱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15 6	진 교	고 이	45 6- 18	대	475	진 교	고 이	45 6- 18	대	312. 6	162. 4		신*** 회	****-**
15 7	진 교	고 이	47 4- 2	전	648	진 교	고 이	47 4- 2	전	907. 8	259. 8		여*호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 면 학리 ***
15 8	진 교	고 이	47 3- 1	대	430	진 교	고 이	47 3- 1	대	410. 2	19.8		여*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15	진	교	47			진	교	47		197.			여*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9	교	이	4	전	215	교	이	4	전	6		17.4		면 고이리 ***-*	
160	진	교	45 4-1	전	195	진	교	45 4-1	전	136. 2		58.8	유*임	***	
161	진	교	45 4-2	전	268	진	교	45 4-2	전	260. 5		7.5	유*임	***	
162	진	교	45 4-4	전	639	진	교	45 4-4	전	483. 3		155. 7	유*임	***	
163	진	교	산 11 2-1	임 야	156	진	교	49 6-6	임 야	202. 4	46.4		유*임	***	
164	진	교	48 4-1	대	641	진	교	48 4-1	대	768. 9	127. 9		윤*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165	진	교	산 88 -7	임 야	2,0 19	진	교	43 8-11	임 야	1,48 0.6		538. 4	이*기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 면 박달리 ***	
166	진	교	45 6-25	대	481	진	교	45 6-25	대	540. 8	59.8		이*현	***	
167	진	교	45 6-54	전	140	진	교	45 6-54	전	188. 1	48.1		이*현	***	
168	진	교	47 4-1	전	721	진	교	47 4-1	전	3,27 8.1	464. 1		이*현	***	
169	진	교	47 4-3	전	2,0 93										
170	진	교	산 88 -1 8	임 야	2,7 68	진	교	43 8-8	임 야	2,88 7.0	119. 0		이*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171	진	교	45 6-26	전	238	진	교	45 6-26	전	238. 0			이*면	북천면 옥정리	
172	진	교	45 6-36	전	35	진	교	45 6-36	전	35.0			이*면	북천면 옥정리	
173	진	교	45 6-40	전	97	진	교	45 6-40	전	97.0			이*면	북천면 옥정리	
174	진	교	45 6-49	전	95	진	교	45 6-49	전	95.0			이*면	북천면 옥정리	
17	진	교	산		99	진	교	45		99.0			이*면	북천면 옥정리	

5	교	이	11 8- 3	임 야		교	이	5- 11	임 야					
17 6	진 교	고 이	산 11 8- 11	임 야	163	진 교	고 이	45 5- 12	임 야	63.9		99.1	이*면	
17 7	진 교	고 이	산 90	임 야	298	진 교	고 이	43 8- 17	임 야	298. 0			이*식	
17 8	진 교	고 이	45 6- 2	전	137	진 교	고 이	45 6- 2	전	137. 0			이*경	서울 종로구 계동 ***
17 9	진 교	고 이	45 6- 30	도 로	48	진 교	고 이	45 6- 30	도 로	48.0			이*경	서울 종로구 계동 ***
18 0	진 교	고 이	45 7- 4	전	79	진 교	고 이	45 7- 4	전	79.0			이*경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
18 1	진 교	고 이	산 11 6- 5	도 로	289	진 교	고 이	45 7- 11	도 로	289. 0			이*경	북천면 옥정리 ***
18 2	진 교	고 이	산 11 6- 12	임 야	387	진 교	고 이	45 7- 15	임 야	171. 1			이*경	북천면 옥정리 ***
						진 교	고 이	45 7- 16	임 야	182. 7			이*경	북천면 옥정리 ***
						진 교	고 이	45 7- 17	임 야	33.2			이*경	북천면 옥정리 ***
18 3	진 교	고 이	산 12 2- 5	도 로	41	진 교	고 이	45 5- 14	도 로	41.0			이*경	북천면 옥정리 ***
18 4	진 교	고 이	산 12 3- 5	도 로	543	진 교	고 이	45 0- 9	도 로	211. 0			이*경	북천면 옥정리 ***
						진 교	고 이	45 0- 10	도 로	332. 0			이*경	북천면 옥정리 ***
18 5	진 교	고 이	43 7- 1	도 로	268	진 교	고 이	43 7- 1	도 로	268. 0			이*룡	***
18	진	교	43		30	진	교	43		30.0			이*룡	***

6	교	이	7-2	도		교	이	7-2	도						
187	진교	고이	50-0-5	전	698	진교	고이	50-0-5	전	821.5	123.5		이*복	***	
188	진교	고이	50-0-9	전	519	진교	고이	50-0-9	전	673.5	154.5		이*복	***	
189	진교	고이	50-0-10	전	711	진교	고이	50-0-10	전	649.8		61.2	이*복	***	
190	진교	고이	50-0-21	전	527	진교	고이	50-0-21	전	379.5		147.5	이*복	***	
191	진교	고이	산 10-6-9	임야	73	진교	고이	50-0-26	임야	71.3		1.7	이*복	***	
192	진교	고이	45-6-19	대	357	진교	고이	45-6-19	대	415.8	58.8		이*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신촌길 **	
193	진교	고이	50-1	대	443	진교	고이	50-1	대	976.8	18.8		이*석	***	
194	진교	고이	50-2	대	515										
195	진교	고이	50-3-1	전	252	진교	고이	50-3-1	전	612.7		84.3	이*석	***	
196	진교	고이	50-9	전	445										
197	진교	고이	44-1-5	도로	3	진교	고이	44-1-5	도로	0.0		3.0	이*점	***-*	
198	진교	고이	45-6	전	278	진교	고이	45-6	전	159.7		118.3	이*점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199	진교	고이	45-6-14	대	489	진교	고이	45-6-14	대	557.6	68.6		이*점	***-*	
200	진교	고이	49-2-1	전	709	진교	고이	49-2-1	전	709.0			이*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	
201	진교	고이	산 12-4-1	임야	747	진교	고이	45-0-1	임야	750.6	3.6		이*기	***	
202	진교	고이	45-1	전	49	진교	고이	45-1	전	123.7	74.7		이*창	***	
20	진교	고	45			진교	고	45		661.			이*창	***	

3	교	이	6-24	전	684	교	이	6-24	전	2		22.8		
204	진	교	47-7-1	전	251	진	교	47-7-1	전	8	338.8	87.8	이*창	***
205	진	교	47-7-2	도로	17	진	교	47-7-2	도로	0.0		17.0	이*창	***
206	진	교	47-11-5	산 임야	496	진	교	47-7-3	임야	5	430.5	65.5	이*창	***
207	진	교	50-0-6	전	172	진	교	50-0-6	전	1,276.2	595.2		이*숙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 동 ***-* 들말한보타 운 ***-***
208	진	교	50-0-7	전	149									
209	진	교	50-0-8	전	360									
210	진	교	45-5	전	833	진	교	45-5	전	0	833.0		이*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 산동 ****-* 동서 타워 가-***
211	진	교	45-11-6-1	산 임야	2,564	진	교	45-7-10	임야	4.0	2,564.0		이*일	창원시 명서동 ***-
													이*경	북천면 옥정리 ***
212	진	교	45-6-7	전	440	진	교	45-6-7	전	0.0		440.0	이*칠	****-**
213	진	교	45-6-53	전	81	진	교	45-6-53	전	0.0		81.0	이*칠	****-**
214	진	교	45-6-56	전	428	진	교	45-6-56	전	0.0		428.0	이*칠	****-**
215	진	교	45-6-55	대	660	진	교	45-6-55	대	0.2	1,300.2	640.2	이*칠	****-**
216	진	교	45-6-16	전	754	진	교	45-6-16	전	7.4	1,117.4	363.4	이*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17	진	교	48-3-18	전	350	진	교	48-3-18	전	0	579.0	318.1	이*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진	교	48-3-	전	6	197.6	108.	이*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1			5							
21	진	교	49	대	144	진	교	49	대	243.			이*칠	***				
8	교	이	6-3			교	이	6-3		0	99.0							
21	진	교	산	임	1,3	진	교	49	임	288.		1,02	이*칠	***				
9	교	이	10	야	10	교	이	9-3	야	6		1.4						
22	진	교	산	임	31	진	교	10	임	0.0		31.0	이*칠	***				
0	교	이	10	야		교	이	8-4	야									
22	진	교	45	도	208	진	교	45	도	0.0		208.	이*기	***				
1	교	이	6-33	로		교	이	6-33	로			0						
22	진	교	48	전	11	진	교	48	전	0.0		11.0	이*기	***				
2	교	이	0-1			교	이	0-1										
22	진	교	48	대	278	진	교	48	대	205.		72.8	이*기	***				
3	교	이	1-1			교	이	1-1		2								
22	진	교	49	대	261	진	교	49	대	374.	113.		이*기	***				
4	교	이	6			교	이	6		4	4							
22	진	교	49	대	403	진	교	49	대	328.		74.1	이*기	***				
5	교	이	6-2			교	이	6-2		9								
22	진	교	49	전	255	진	교	49	전	267.		12.9	이*기	***				
6	교	이	9			교	이	9		9								
22	진	교	산	임	89	진	교	49	임	122.		33.7	이*기	***				
7	교	이	10	야		교	이	6-4	야	7								
22	진	교	산	임	298	진	교	49	임	258.		39.7	이*기	***				
8	교	이	11	야		교	이	6-5	야	3								
22	진	교	45	도	80	진	교	45	도	80.0			이*식	김해시 외동 ***-*번 지 동서아파트 ***동 ***호				
9	교	이	5-7	로		교	이	5-7	로									
23	진	교	50	목	621													
0	교	이	0-1	장														
				용		진	교	50	목	3,16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지				0-1	장	7.6	927.			면 고이리 ***-*				
				지	925			1	용		6							
				지					지									
23	진	교	50	목	694													
1	교	이	0-17	장														
				용														
				지														
23	진	교	50	목	694													
2	교	이	0-	목														
				지														

			20	장 용 지													
23 3	진 교	고 이	50 0- 2	대	627	진 교	고 이	50 0- 2	대	868. 6	241. 6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23 4	진 교	고 이	50 0- 18	전	1,1 30	진 교	고 이	50 0- 18	전	1,61 1.0	481. 0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23 5	진 교	고 이	51 7- 1	전	1,7 72	진 교	고 이	51 7- 1	전	1,65 6.9		115. 1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리 ***-*			
23 6	진 교	고 이	산 12 0- 1	임 야	98	진 교	고 이	산 12 0- 1	임 야	0.0		98.0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3 7	진 교	고 이	산 12 0- 8	임 야	89	진 교	고 이	산 12 0- 8	임 야	0.0		89.0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3 8	진 교	고 이	48 5- 4	대	220	진 교	고 이	48 5- 4	대	351. 2	131. 2		정*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3 9	진 교	고 이	51 6- 3	전	1,1 24	진 교	고 이	51 6- 3	전	1,37 8.8	254. 8		정*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4 0	진 교	고 이	51 6- 4	전	1,4 36	진 교	고 이	51 6- 4	전	1,23 0.5		205. 5	정*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4 1	진 교	고 이	51 6- 6	전	1,7 10	진 교	고 이	51 6- 6	전	1,03 7.5	33.9		정*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51 6- 8	전	730. 3	23.9		정*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4 2	진 교	고 이	산 10 2- 4	임 야	603	진 교	고 이	51 6- 10	임 야	503. 8		99.2	정*순	***			
24 3	진 교	고 이	산 10 2- 5	임 야	3,2 99	진 교	고 이	51 6- 11	임 야	3,29 9.0			정*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 면 고이신촌길 ***-*			
24 4	진 교	고 이	산 10 4- 1	임 야	429	진 교	고 이	51 6- 13	임 야	410. 7		18.3	정*순	***			
24	진	교	43			진	교	43		4,10			정*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			

5	교	이	8-4	임야	4,484	교	이	8-4	임야	5.5		378.5		면	진정리 ***
246	진교	고이	산88-1	임야	3,637	진교	고이	438-5	임야	3,550.4		24.0	정*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
						진교	고이	438-18	임야	62.2		0.4	정*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
247	진교	고이	438	전	1,438	진교	고이	438	전	1,438.0			정*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
													서*원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
248	진교	고이	442	전	1,505	진교	고이	442	전	1,729.2	224.2		정*갑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 미진스위트빌아파트 ***동 ***호	
249	진교	고이	442-1	도로	247	진교	고이	442-1	도로	0.0		247.0	정*갑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 미진스위트빌아파트 ***동 ***호	
250	진교	고이	474-4	전	280	진교	고이	474-4	전	457.8	177.8		정*임		***
251	진교	고이	516-2	전	998	진교	고이	516-2	전	974.2		23.8	정*석	창원시 대방동 *** 대방대동아파트 ***동 ***호	
252	진교	고이	산102-8	임야	303	진교	고이	516-12	임야	303.0			정*석	창원시 대방동 *** 대방대동아파트 ***동 ***호	
253	진교	고이	산123-6	임야	286	진교	고이	450-8	임야	286.0	15.0		정*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 ***동 ***호(망미동,진성빌라)	
254	진교	고이	산123-12	임야	15										
255	진교	고이	산123-1	임야	838	진교	고이	450-2	임야	1,215.0	377.0		정*수		***
256	진교	고이	456-3	임야	175	진교	고이	456-3	임야	91.8			조*진		
						진교	고이	456-63	임야	83.2			조*진		
257	진교	고이	516-전		423	진교	고이	516-전		398.2			천*덕		

			1				1										
						진 교	고 이	51-6-9	전	24.8					천*덕		
258	진 교	고 이	485-2	도 로	46	진 교	고 이	485-2	도 로	46.0				풍** 표			
259	진 교	고 이	산 112	임 야	637	진 교	고 이	485-6	임 야	339.5				풍** 표		***	
						진 교	고 이	485-7	임 야	297.5				풍** 표		***	
260	진 교	고 이	485-3	도 로	89	진 교	고 이	485-3	도 로	89.0				풍** 표		***	
261	진 교	고 이	438-1	도 로	76	진 교	고 이	438-1	도 로	927.5	867.4			하*군			
						진 교	고 이	438-19	도 로	244.5	228.6			하*군			
262	진 교	고 이	441-6	도 로	253	진 교	고 이	441-6	도 로	442.7	189.7			하*군			
263	진 교	고 이	454-3	도 로	53	진 교	고 이	454-3	도 로	0.0		53.0		하*군			
264	진 교	고 이	455-5	도 로	43	진 교	고 이	455-5	도 로	0.0		43.0		하*군			
265	진 교	고 이	456-12	도 로	26	진 교	고 이	456-12	도 로	0.0		26.0		하*군			
266	진 교	고 이	456-13	도 로	53	진 교	고 이	456-13	도 로	0.0		53.0		하*군			
267	진 교	고 이	456-27	도 로	39	진 교	고 이	456-27	도 로	0.0		39.0		하*군			
268	진 교	고 이	456-58	도 로	69	진 교	고 이	456-58	도 로	323.9	254.9			하*군			
269	진 교	고 이	456-61	도 로	10	진 교	고 이	456-61	도 로	0.0		10.0		하*군			
270	진 교	고 이	457-2	도 로	205	진 교	고 이	457-2	도 로	200.9		4.1		하*군			

27 1	진 교	고 이	47 8- 1	도 로	76	진 교	고 이	47 8- 1	도 로	0.0		76.0	하*군		
27 2	진 교	고 이	48 1- 2	도 로	13	진 교	고 이	48 1- 2	도 로	0.0		13.0	하*군		
27 3	진 교	고 이	48 2- 2	도 로	17	진 교	고 이	48 2- 2	도 로	0.0		17.0	하*군		
27 4	진 교	고 이	49 1- 2	도 로	32	진 교	고 이	49 1- 2	도 로	0.0		32.0	하*군		
27 5	진 교	고 이	49 3- 2	도 로	181	진 교	고 이	49 3- 2	도 로	21.1		159. 9	하*군		
27 6	진 교	고 이	49 7- 3	도 로	18	진 교	고 이	49 7- 3	도 로	0.0		18.0	하*군		
27 7	진 교	고 이	49 9- 1	도 로	282	진 교	고 이	49 9- 1	도 로	679. 6	441. 1		하*군		
						진 교	고 이	49 9- 5	도 로	16.3	10.6		하*군		
						진 교	고 이	49 9- 6	도 로	107. 7	69.9		하*군		
27 8	진 교	고 이	50 0- 16	도 로	111	진 교	고 이	50 0- 16	도 로	0.0		111. 0	하*군		
27 9	진 교	고 이	50 0- 25	도 로	86	진 교	고 이	50 0- 25	도 로	344. 9	312. 2		하*군		
						진 교	고 이	50 0- 28	도 로	561. 7	508. 4		하*군		
28 0	진 교	고 이	50 2- 1	도 로	198	진 교	고 이	50 2- 1	도 로	0.0		198. 0	하*군		
28 1	진 교	고 이	산 10 8- 1	도 로	348	진 교	고 이	산 10 8- 1	도 로	0.0		348. 0	하*군		
28 2	진 교	고 이	산 11 8- 14	도 로	1,7 85	진 교	고 이	45 5- 17	도 로	3,07 5.9	1,32 8.8		하*군		
						진 교	고 이	45 5- 17	도 로	28.9	12.5		하*군		

						진 교	고 이	18 45 5- 19	도 로	37.8	16.3		하*군		
28 3	진 교	고 이	산 12 0- 9	도 로	703	진 교	고 이	산 12 0- 9	도 로	0.0		703. 0	하*군		
28 4	진 교	고 이	산 11 8- 16	도 로	27	진 교	고 이	산 11 8- 16	도 로	0.0		27.0	하*군		
28 5	진 교	고 이	산 11 8- 18	도 로	332	진 교	고 이	산 11 8- 18	도 로	0.0		332. 0	하*군		
28 6	진 교	고 이	산 12 0- 2	도 로	261	진 교	고 이	산 12 0- 2	도 로	0.0		261. 0	하*군		
28 7	진 교	고 이	산 12 3- 3	도 로	4,9 82	진 교	고 이	45 0- 3	도 로	4,93 8.7		43.3	하*군		
28 8	진 교	고 이	산 12 4- 8	구 거	49	진 교	고 이	45 0- 11	구 거	49.0			하 동 ****조 합	하동읍 광평리 ****-**	
28 9	진 교	고 이	47 4- 5	구 거	41	진 교	고 이	47 4- 5	구 거	41.0			한 국 ***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9 0	진 교	고 이	47 4- 6	구 거	29	진 교	고 이	47 4- 6	구 거	53.9	24.9		한 국 ***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9 1	진 교	고 이	산 87 -4	구 거	498	진 교	고 이	43 7- 3	구 거	498. 0			한 국 ***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9 2	진 교	고 이	산 88 -1 5	구 거	7,3 61	진 교	고 이	43 8- 6	구 거	7,42 6.0	65.0		한 국 ***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9 3	진 교	고 이	산 11 8- 1	임 야	3,8 68	진 교	고 이	45 5- 10	임 야	3,92 4.8	56.8		합 천 ***** 구와공 중중	***	
29 4	진 교	고 이	산 89	임 야	198	진 교	고 이	43 8- 16	임 야	198. 0			황*수		

295	진교	송원	262-1	도로	83	진교	송원	262-1	도로	83.0			강*룡	고이리 ***
296	진교	송원	872	도로	367	진교	송원	872	도로	369.9	98.9		국(국***부)	
						진교	송원	872-1	도로	131.1	35.1		국(국***부)	
297	진교	송원	873-1	구거	81	진교	송원	873-1	구거	78.8		2.2	국(국****부)	
298	진교	송원	873-2	도로	149	진교	송원	873-2	도로	0.0		149.0	국(국***부)	
299	진교	송원	258-15	도로	63	진교	송원	258-15	도로	63.0			국(농**부)	
300	진교	송원	산85-6	도로	87	진교	송원	산85-6	도로	0.0		87.0	김*생	고이리 ***
301	진교	송원	산85-10	도로	489	진교	송원	산85-10	도로	0.0		489.0	김*생	고이리 ***
302	진교	송원	261-2	전	63	진교	송원	261-2	전	0.0		63.0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303	진교	송원	264-2	전	57	진교	송원	264-2	전	0.0		57.0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304	진교	송원	264-3	임야	40	진교	송원	264-3	임야	0.0		40.0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305	진교	송원	269-1	전	1,134	진교	송원	269-1	전	561.4		459.3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진교	송원	269-6	전	62.3		51.0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306	진교	송원	산85	임야	15,532	진교	송원	264-4	임야	15,532.0			김*근	대구 북구 관음동****-**
307	진교	송원	268-1	전	1,226	진교	송원	268-1	전	1,623.5	397.5		김*근	고이리 ***
308	진교	송원	259-1	도로	291	진교	송원	259-1	도로	0.0		291.0	김*생	고이리 ***
30	진	송	25	도		진	송	25	도	0.0			김*생	고이리 ***

9	교	원	9-3	로	212	교	원	9-3	로			212.0		
310	진	송	261-1	도로	69	진	송	261-1	도로	0.0		69.0	김*생	고이리 ***
311	진	송	260-2	도로	129	진	송	260-2	도로	0.0		129.0	김*생	고이리 ***
312	진	송	267-2	전	251	진	송	267-2	전	315.3	64.3		김*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18번길 ** (양정동)
313	진	송	269-3	전	1,532	진	송	269-3	전	1,189.4	105.1		김*규	고이리 ***
						진	송	269-7	전	491.1	43.4		김*규	고이리 ***
314	진	송	269-4	도로	42	진	송	269-4	도로	0.0		42.0	김*규	고이리 ***
315	진	송	263-1	답	20	진	송	263-1	답	0.0		20.0	김*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 **,***동 ***호 (통영청구하이츠)
316	진	송	269-2	도로	26	진	송	269-2	도로	26.0			김*도	고이리
317	진	송	262-2	전	269	진	송	262-2	전	416.4	147.4		이*기	고이리 ***
318	진	송	264	전	1,403	진	송	264	전	1,431.1	28.1		이*표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
319	진	송	269-5	전	4,918	진	송	269-5	전	3,999.9		918.1	이*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8
320	진	송	265-7	답	3	진	송	265-7	답	3.0			천**조	고이리
321	진	송	268-2	도로	73	진	송	268-2	도로	73.0			최*상	고이리 ***
322	진	송	262-3	도로	25	진	송	262-3	도로	0.0		25.0	하*군	
323	진	송	264-1	도로	8	진	송	264-1	도로	101.8	93.8		하*군	
32	진	송	26	도		진	송	26	도	0.0			하*군	

4	교	원	7-1	로	136	교	원	7-1	로			136.0		
325	진	송	산	도	909	진	송	264-6	도	5,201.4	1,178.4		하*군	
326	교	원	85-7	로	3,114									
327	진	송	산	도	178	진	송	264-5	도	2,058.3	215.3		하*군	
328	교	원	85-1	로	1,665									

하동군 공고 제2019 -1336호

하동군 섬진강 환경지킴이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섬진강 유역 수질 보전활동 및 과내 사무보조를 위한 하동군 섬진강 환경지킴이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하 동 군 수

1 채용 내용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1명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하천변 오염행위 신고·감시·계도 - 환경정화 활동 - 현황조사 - 기타 과내사무 보조	2020. 1. 2. ~ 2020.12.31.	예산의 범위 내 조정가능

2 응시 자격

- 성 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역조건 : 하동군에 주소(실거주)를 두고 있는자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하동읍내 거주자
 - 전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엑셀, 각종 전산시스템 등) 소지자
 - 운전면허증 보유 및 자기차량 소유자

3 채용 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채용인원보다 1차 합격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9.(목) 09:00 ~ 12. 26.(목) 18:00
- 접 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방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접수 분에 한함)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서 류 심 사 : 2019. 12. 27(금) - 개별통지
- 면 접 시 험 : 2019. 12. 30(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2. 31(화) - 개별통지
 -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연락)

6 임금 및 근로조건

- 보 수 : 일급 68,720원(2020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 4대 보험가입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 근로시간 : 1일 8시간(08:00 ~ 17:00), 주5일 근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면허증 등) 1부.
 -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혹은 그 배우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및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하동군 섬진강 환경지킴이 사무보조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동군수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 · 수료 · 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3. 『 응시원서 』 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생년월일 :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19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아.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 력 서

구분	응시 분야	
내용	하동군 섬진강 환경지킴이 사무보조	

	성 명	(한문)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주 소			
	전화번호	E-MAIL		
	핸 드 폰	결혼유무	미혼 / 기혼	
	가족사항	남 녀 중	주거사항	동거 / 비 동거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소재지	
						졸업 / 재학	
						졸업 / 재학 / 휴학	
						졸업 / 재학 / 휴학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 . ~ .				
	. . ~ .				
	. . ~ .				

신 체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병 역	구분	병과	계급	소속부대	
	cm	kg	좌:	형		필 / 면제	년 월 ~ 년 월			
			우: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근무처	직위	동거	외 국 어	언 어	능 렷	
									영 어	상 중 하
									공인시험	점 수

O A 능 렷	상 중 하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 류	등급
	상 중 하		. .		
	상 중 하		. .		
	상 중 하		.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호

▶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2019.12.05.)호에 의거 시행한 『2019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최종합격자

분 야	임용등급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주사 (6급)	2019-1-0001

【문 의 처】

경상남도 하동군 행정과 인사담당자
(☎ 055-880-2153)

하동군 공고 제2019-1363호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입대상(안 제3조)
 - 보험금 신청(안 제6조)
 - 보험금 지급(안 제8조)
 -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880-2258, FAX 880-2249 tlsdk71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하

동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 하동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